

# I. 일반

## 1. 국가개요

### 가. 국가개황

국명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면적	7,692,024 km <sup>2</sup> (자료원 : 호주통계청, 2018 기준)
수도	캔버라(Canberra)
인구	25,404,746 명 (자료원 : 호주통계청, 2019 기준)
민족(인종)	영국계(36.1%), 호주계(33.5%), 중국계(5.6%), 인도계(4.6%) 등
언어	영어
종교	천주교(22.6%), 영국성공회(13.1%), 기타 기독교(16.3%), 이슬람교(2.6%), 불교(2.4%) 등
기후	북부: 열대 남부: 온대 서부: 열대
국가원수	군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Queen Elizabeth II) 총독: 데이비드 헐리(David Hurley) 총리: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국가정보(일반-국가개요)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2. 한국과의 관계

###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 국교 수립일

1949-08-14 (자료원 : 호주외무부)

####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문화협정	1972-07-09	문화협정 발효	
무역 및 경제관계발전협정	1975-06-17	무역 및 경제관계발전협정 발효	
원자력평화이용 및 핵물질이전협정	1979-05-02	원자력평화이용 및 핵물질이전협정 발효	
어업협정	1983-11-24	어업협정 발효	
세관당국 간 상호지원양해각서	1988-08-09	세관당국 간 상호지원양해각서 발효	
항공협정	1992-04-09	항공협정 발효	
산업기술협력약정	1993-06-22	산업기술협력약정 발효	
경제공동위설치약정	1993-12-17	경제공동위설치약정 발효	
형사사법공조조약	1993-12-19	형사사법공조조약 발효	
취업관광(Working Holiday)비자발급협정	1995-07-01	취업관광(Working Holiday)비자발급협정 발효	
핵물질 재이전교환각서	1997-11-14	핵물질 재이전교환각서 발효	
민사사법공조 조약	2000-01-16	민사사법공조 조약 발효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2000-04-05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발효	
에너지 및 광물자원협력협정	2005-10-18	에너지 및 광물자원협력협정 발효	
철새보호협정	2007-07-13	철새보호협정 발효	2015년 12월 3일 개정안 발효
사회보장협정	2008-10-01	사회보장협정 발효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010-12-09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발효	

자유무역협정	2014-12-12	자유무역협정 발효	
--------	------------	-----------	--

<자료원 : 한국외교부>

## 한국교민 수

180,004 명 (자료원 : 한국외교부)

##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 정치

2018년 11월 17일 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회의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호주는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나라일 뿐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며, "호주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 남방정책의 협력국"임을 강조했다.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호주와 한국은 그동안 굉장히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두 국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이후 양국의 교역 관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경제

포스코-시드니대 산학협력 제휴 체결 : 포스코(POSCO)와 시드니대학교가 2018년 11월 6일 학술, 기술 정보 교류에 관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고성능 철강 신기술 및 솔루션 개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공동 학술 연구 및 지식교류, 포스코 워크숍과 인턴십 제공 등이다. 시드니대는 포스코 호주법인(POSCO Australia)과 지식 교류 및 학술 연구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 문화

2018 한국대사배 바둑대회 개최 : 호주의 다문화권 바둑 애호가들이 참가한 '2018년 한국대사배 바둑대회'가 지난 2018년 8월 12일 개최됐다. 한국과 중국계 참여자 20여 명을 비롯해 호주인, 뉴질랜드인, 네덜란드인, 러시아인, 대만인 등 50여명의 다문화권 바둑인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교류와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2018 한국대사배 바둑대회는 주호한국대사관이 주최하였으며 호주바둑협회와 재호한인 바둑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3. 경제지표

####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2.59	2.46	2.78	2.43	2.68
명목GDP (십억\$)	1,454.98	1,232.91	1,264.52	1,379.55	1,427.77
1인당 GDP (PPP, \$)	47,178.79	48,166.02	49,145.45	50,390.88	52,362.97
정부부채 (% of GDP)	34.15	37.84	40.63	40.81	40.51
물가상승률 (%)	2.51	1.49	1.28	1.97	2.16
실업률 (%)	6.07	6.04	5.71	5.59	5.29
수출액 (백만\$)	239,937.25	187,731.89	192,465.84	231,055.5	257,168.88
수입액 (백만\$)	237,351.76	208,790.65	196,191.96	228,772.13	235,438.55
무역수지 (백만\$)	2,585.49	-21,058.76	-3,726.12	2,283.37	21,730.33
외환 보유고 (백만\$)	50,944.25	43,180.25	50,982.29	63,678.05	51,155.66
이자율 (%)	2.5	2	1.5	1.5	1.5
환율 (자국통화)	1.11	1.33	1.35	1.3	1.34

<자료원 : IMF>

#### 경제 동향

호주준비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2분기 호주의 경제 성장률은 3.1%로 2018년 역시 여타 선진국 대비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IMF는 2018년 호주의 1인당 GDP를 세계 11위로 집계하였으며, 이는 호주화 가치 하락에 따른 평가 절하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 정부의 낮은 기준 금리와 통화 정책으로 2017년의 전반적 교역규모와 민간 소비, 민간 투자는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있으며 정부 부채 역시 감소세에 있다.

호주정부는 2018/19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근로계층을 위한 세금 경감,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 성장 장려, 보건 및 교육 등 필수 서비스 보장, 안보 강화 및 정부 지출의 엄격한 통제를 강조하는 한편, 이민자 및 난민 대상의 복지를 축소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의사 수를 200명가량 줄이는 등 해외 이주자에 대한 예산 투입은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연방 정부는 2018/19 회계연도에 145억 달러의 적자 재정을 달성하고, 2019/20 회계연도에는 22억 달러 규모의 소폭 흑자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편,

2018년 호주 통계청 발간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가계자산대비 가계부채는 2016년 29%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1999년 10% 대비 3배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OECD 분석에 따르면 호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11.1%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 전망

OECD는 2018년 호주 경제성장률을 2.9%로 예측, 호주준비은행 및 내셔널호주은행 역시 각각 3.0%와 2.8%의 유사한 성장률을 전망했다. OECD는 현재 호주 내 진행 및 계획 중에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 부문의 정부지원 및 공공투자가 호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의 경제침체와 균형조정이 호주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높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침체 또한 위험 요소로 작용 가능성이 있다.

지난 10년 사이 호주달러 가치 변동이 심화되면서 2012년 연평균 1.04 미국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호주달러는 2015년 0.70 선이 붕괴, 2018년 11월 기준 0.72 수준에 그쳤다. 호주 내 금융 및 무역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및 국내 경기 불안 여파로 호주달러가 향후 미국달러 대비 0.60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정부의 경제둔화 및 경기부양 위한 저금리 정책 실시로 2016년 사상 최저의 1.5%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많은 금융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2018년 8월 1.5%의 기준금리를 유지한 바 있다. 2018년 호주 물가상승률은 2.1%로 호주준비은행 예상치인 2.0~3.0%에 겨우 근접한 수준이다. 다만, 임금인상을 회복으로 인한 가구소비 회복 등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2.5% 수준까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관광업 발달, 호주 이민자 수 증가로 인한 교육서비스 증대, 가속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분야 발달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점진적 실업을 회복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일반-경제지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II. 무역

### 1. 수출입

####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81,413,612,515
2	일본	43,135,786,659
3	대한민국	17,891,713,796
4	미국	9,943,289,722
5	인도	7,995,340,127
6	싱가포르	7,609,098,937
7	뉴질랜드	7,179,158,595
8	말레이시아	5,431,981,957
9	타이	4,637,086,023
10	인도네시아	4,533,816,802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61,012,456,214
2	일본	29,826,962,032
3	대한민국	13,299,325,020
4	미국	9,977,449,262
5	인도	7,946,612,862
6	뉴질랜드	6,262,277,498
7	Areas, nes	5,261,869,860
8	싱가포르	5,092,143,034
9	Other Asia, nes	4,747,796,217

10	인도네시아	3,729,748,714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59,992,749,592
2	일본	26,344,514,675
3	대한민국	12,770,223,384
4	미국	8,761,918,095
5	인도	7,919,027,854
6	영국	7,504,114,602
7	홍콩	7,207,580,834
8	뉴질랜드	6,462,073,528
9	Other Asia, nes	5,278,872,340
10	Areas, nes	4,576,687,556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68,095,677,026
2	Areas, nes	34,610,960,683
3	일본	24,008,420,963
4	대한민국	13,145,746,507
5	인도	10,757,137,130
6	홍콩	9,110,455,502
7	미국	8,425,486,041
8	뉴질랜드	6,795,708,460
9	Other Asia, nes	6,340,086,475
10	인도네시아	4,882,629,587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4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6,854,594,144
2	미국	24,148,859,083
3	일본	15,478,594,694
4	싱가포르	11,396,038,066
5	독일	10,706,487,526
6	대한민국	10,614,475,071
7	말레이시아	10,036,755,884
8	타이	9,844,415,982
9	뉴질랜드	7,081,295,835
10	인도네시아	5,491,388,943

<자료원 : UN Comtrade>

####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6,292,722,371
2	미국	22,560,990,950
3	일본	14,793,098,322
4	대한민국	10,895,840,476
5	타이	10,197,010,735
6	독일	9,275,084,622
7	말레이시아	7,391,929,296
8	싱가포르	6,959,026,556
9	뉴질랜드	5,726,842,608
10	영국	5,338,147,910

<자료원 : UN Comtrade>

####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4,241,021,648
2	미국	21,703,311,764
3	일본	14,593,655,135
4	타이	10,872,745,342

5	독일	10,079,657,771
6	대한민국	8,099,729,825
7	말레이시아	6,912,293,944
8	뉴질랜드	5,626,678,111
9	영국	5,310,179,204
10	싱가포르	5,219,371,655

<자료원 : UN Comtrade>

##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9,970,970,531
2	미국	23,613,219,136
3	일본	16,510,874,556
4	대한민국	15,899,128,687
5	Areas, nes	15,085,404,246
6	타이	11,077,517,656
7	독일	10,767,514,569
8	말레이시아	8,508,936,988
9	싱가포르	6,386,107,544
10	뉴질랜드	6,058,894,879

<자료원 : UN Comtrade>

## 나. 품목별 수출입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5년)

##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60111	응결하지 아니한 것	59,892,090,076
2	270112	유연탄	34,419,903,173
3	271111	천연가스	16,095,569,272
4	710813	기타 일차제품 형상의 것	11,880,279,964
5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9,633,230,879

6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947,865,209
7	100199	기타	5,259,419,278
8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을 제외한다)	5,101,316,580
9	260300	동광과 그 정광	4,911,333,567
10	020230	뼈 없는 것	4,327,586,848

<자료원 : UN Comtrade>

##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36,583,292,188
2	270112	유연탄	28,414,117,926
3	271111	천연가스	12,428,599,293
4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0,667,767,054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095,368,549
6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을 제외한다)	4,854,065,460
7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570,286,861
8	100199	기타	4,322,460,486
9	020230	뼈 없는 것	4,226,394,834
10	260300	동광과 그 정광	3,659,479,813

<자료원 : UN Comtrade>

##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39,507,338,262
2	270112	유연탄	29,532,161,686
3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3,432,628,520
4	271111	천연가스	13,368,660,709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328,002,190
6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을 제외한다)	4,103,103,020
7	100199	기타	3,561,934,619
8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527,584,753
9	260300	동광과 그 정광	3,488,981,253
10	020230	뼈 없는 것	3,062,967,108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48,344,513,499
2	270112	유연탄	43,296,087,372
3	271111	천연가스	19,669,208,955
4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13,003,293,108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8,370,613,966
6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커런덤을 제외한다)	5,617,982,439
7	100199	기타	4,542,201,941
8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016,642,137
9	260300	동광과 그 정광	3,669,225,888
10	020230	뼈 없는 것	3,195,798,408

<자료원 : UN Comtrade>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 5년)

2014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18,305,795,817
2	271019	기타	13,926,379,163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8,086,940,661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375,600,517
5	300490	기타	5,514,403,216
6	851712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918,929,355
7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3,777,119,605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529,027,210
9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2,928,172,102
10	710812	기타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	2,650,872,154

<자료원 : UN Comtrade>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0,602,251,897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하고 3,000cc 이하인 것	7,457,661,843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7,103,198,586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453,257,485
5	300490	기타	4,455,963,710
6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3,788,865,535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743,108,393
8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3,261,771,041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3,243,016,330
10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것	2,598,048,244

<자료원 : UN Comtrade>

##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8,625,427,433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하고 3,000cc 이하인 것	7,969,621,214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903,676,026
4	300490	기타	4,711,745,548
5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4,205,886,848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599,687,906
7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842,427,481
8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2,812,854,989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2,734,882,911
10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것	2,506,355,428

<자료원 : UN Comtrade>

##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2,000,827,040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1,442,992,828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하고 3,000cc 이하인 것	8,988,196,819
4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7,495,342,953
5	8905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191,241,512
6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5,258,474,712
7	300490	기타	4,423,337,199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159,610,147
9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3,349,003,756
10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3,097,542,090

<자료원 : UN Comtrade>



국가정보(무역-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한국과의 수출입

###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4	10,283	20,413	-10,130
2015	10,831	16,438	-5,607
2016	7,501	15,176	-7,675
2017	19,862	19,160	702
2018	8,194	16,913	-8,71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2,229	0	2,228
2	1332	경유	1,982	0	1,982
3	1333	제트유및등유	1,103	0	1,102
4	1331	휘발유	969	0	968
5	2140	합성수지	146	3	142
6	7251	건설중장비	126	1	125
7	2283	수산화나트륨	124	0	124
8	8352	축전지	140	1	138
9	6212	알루미늄조가공품	111	3	107
10	1339	기타석유제품	88	0	87

####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8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7411	승용차	1,759	0	1,759
2	1332	경유	1,551	0	1,551
3	1333	제트유및등유	1,398	0	1,398
4	1331	휘발유	594	0	594
5	2140	합성수지	148	3	145
6	7251	건설중장비	141	1	140
7	2283	수산화나트륨	116	0	116
8	8352	축전지	115	0	115
9	6212	알루미늄조가공품	96	4	92
10	1339	기타석유제품	96	1	9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22	유연탄	0	5,361	-5,361
2	1340	천연가스	0	2,912	-2,912
3	1120	철광	0	3,585	-3,585
4	0221	가축육류	0	1,165	-1,165
5	1310	원유	0	638	-638
6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738	-738
7	1160	아연광	0	422	-423
8	1190	기타금속광물	0	417	-417
9	0158	당류	1	794	-793
10	1130	동광	0	604	-60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8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22	유연탄	0	4,408	-4,408
2	1340	천연가스	0	3,187	-3,187
3	1120	철광	0	2,768	-2,768
4	0221	가축육류	0	1,120	-1,120

5	1310	원유	0	746	-746
6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597	-597
7	1160	아연광	0	540	-540
8	1190	기타금속광물	0	490	-490
9	0158	당류	5	355	-350
10	1130	동광	0	320	-32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국가정보(무역-한국과의 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3. 무역협정

####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호주-뉴질랜드 공동시장화 협정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 (ANCERTA)	뉴질랜드	1982-12-14	1983-01-01	
싱가포르-호주 자유무역협정 Singapore-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SAFTA)	싱가포르	2003-02-17	2003-07-28	
호주-미국 자유무역협정 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USFTA)	미국	2004-05-18	2005-01-01	
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Thailand-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AFTA)	태국	2004-07-05	2005-01-01	
호주-칠레 자유무역협정 Australia-Chile Free Trade Agreement (ACIFTA)	칠레	2008-07-30	2009-03-06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 역지역 ASEAN-Australia- New Zealand Free Trade Area (AANZFTA)	뉴질랜드, 브루나이, 버마, 말레 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2009-02-27	2010-01-01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 역지역 ASEAN-Australia- New Zealand Free Trade Area (AANZFTA)	태국	2009-02-27	2010-03-12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 역지역 ASEAN-Australia- New Zealand Free Trade Area (AANZFTA)	라오스	2009-02-27	2011-01-01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 역지역 ASEAN-Australia- New Zealand Free Trade Area (AANZFTA)	캄보디아	2009-02-27	2011-02-04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 역지역 ASEAN-Australia- New Zealand Free Trade Area (AANZFTA)	인도네시아	2009-02-27	2012-01-10	
말레이시아-호주 자유무역협정 Malaysi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MAFTA)	말레이시아	2012-05-22	2013-01-01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KAFTA)	한국	2014-04-08	2014-12-12	
일본-호주 경제 동반자 협정 Japan-Austral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AEPA)	일본	2014-07-08	2015-01-15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 Chin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ChAFTA)	중국	2015-06-17	2015-12-20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TPP-11)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2018-03-08	2018-12-30	

<자료원 : 호주외무부>

##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태평양지역경제협력협정 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ACER Plus)	뉴질랜드, 키리바티, 나우루, 니우에, 사모아, 솔로몬 제국, 통가, 투발루	2017년 6월 14일 체결 완료	
페루-호주 자유무역협정 Peru-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PAFTA)	페루	2018년 2월 12일 체결 완료	
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Indonesia-Austral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A-CEPA)	인도네시아	2018년 8월 31일 두 정상 미팅 완료, 추가 협의중	
호주-홍콩 자유무역협정 Australia-Hong Kong Free Trade Agreement (A-HKFTA)	홍콩	2018년 11월 15일 체결 완료	
호주-인도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Australi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인도	협상 진행중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	캐나다, 중국, 코스타리카, 유럽연합,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터키, 미국	협상 진행중	

서비스 무역 협정 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캐나다, 칠레, 대만,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유럽연합,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페로, 한	협상 진행중	
지역별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협상 진행중	
태평양 동맹 자유무역협정 Pacific Alliance Free Trade Agreement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협상 진행중	
호주-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Australia-European Union Free Trade Agreement	유럽연합	협상 진행중	
호주-걸프 협력 회의 자유무역협정 Australia-Gulf Cooperation Council (GCC) FTA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협상 진행중	

<자료원 : 호주외무부>



국가정보(무역-무역협정)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 수입규제 및 관세

###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48025610	A4 용지(A4 Copy Paper)	반덤핑(조사중)	2018-03-19
2	7213.10, 7214.20, 7227.90, 7228.30	철근(Steel Reinforcing Bar)	반덤핑(규제중)	2014-10-17
3	7216.31/32/33/40/50, 7228.70	열연 철강 구조물 류 (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s)	반덤핑(규제중)	2013-10-24
4	7308.20/90, 8502.31/90	풍력 타워 (Wind Tower)	반덤핑(규제중)	2013-08-28
5	7208.40, 7208.51, 7208.52, 7225.40	후판(Hot rolled plate steel)	반덤핑(규제중)	2013-02-12
6	7210.49, 7212.30, 7210.61,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반덤핑(규제중)	2012-09-05
7	7306.30, 7306.61, 7306.69	철강재 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	반덤핑(규제중)	2011-09-1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 수입금지품목

호주 내 수입금지 및 규제 품목들은 호주 국경부대(Australian Border Force)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주로 식품, 식물, 동물, 무기류 및 화학약품에 대한 규제가 많으며, 동 기관 규제 품목 리스트에 있는 제품은 사전 수입허가 취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상세 품목은 해당 링크(<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prohibited-goods/list-of-item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식물성 생산품 중 모든 과일과 야채는 수입 시 허가가 필요하며 위험분석 관리(Risk Analysis Management)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품목별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다.

- 사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산에 대해 수입 금지
- 배: 전 국가(단, 한국산 배는 호주 phytosanitary requirements 충족 시 수입 가능)
- 오렌지: 미국을 제외한 전 국가
- 단감: 미국(캘리포니아산에 한함)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키위: 일본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매실: 뉴질랜드산을 제외한 전 국가
- 양잠: 전 국가산에 대해 수입 금지
- 땅콩: 경작용(종자용)은 수입 금지
- 호프: 종자는 수입금지(가공생산을 위해서만 수입 허용)
- 초목류(Plant의 경우)
- 계란 수입금지(계란 함량이 10% 이상인 식품류의 경우 AQIS 허가 여부에 따라 수입 가능)
- Foot and Mouth Disease(FMD)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유가공 및 유가공 제품은 수입 불가
- 가공되지 않은 닭고기는 완전 수입 금지
- 돼지고기류도 사전 허가 필요

- 한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함유 제품 수입 금지

## 나. 비관세장벽

### 인증제도

#### 1) 품질 인증 제도

호주의 공산품 품질 인증 제도는 무척 까다롭게 운용되고 있다. 유럽의 EC나 미국의 UL 등 선진국 인증을 갖고 있어도 호주 인증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그런 사례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도 일부 품목에서는 까다로운 자국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인증제도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 ○ QAS 마크 제도(Quality Assurance Services)

- 호주는 1966년부터 자국 내 생산 제품과 수입 제품이 호주 내 관련 기관이 정한 기술 표준과 호주 표준협회(Standard Australia)가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엄격한 검사 과정을 통해 제조업체 혹은 수입업체를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기본 취지이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수입규제 요인이 되기도 한다.

- QAS(품질마크 제도)는 제품 품질 및 생산 공정이 호주의 기술 표준과 Standard Australia가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사하는 제도이다.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자발성을 띤 제도로서 특정 품목의 유관 기관에서 별도의 표준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있는 제품의 경우 미이행 시 수입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는 강제성을 띤다(예: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제정한 자동차 안전벨트의 표준 안전 기준, Urban Australian Water Authority가 정한 하수도/배관 관련 품목 안전 기준 등).

- 1966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품질을 보증하는 Standard Mark로 사용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 품목은 호주 QAS의 품질보증 마크 획득을 희망하는 모든 품목이다.

- QAS는 제품 디자인(안전성, 환경, 위생, 성능 및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디자인됐는지 여부), 제조 공정상 품질 관리(생산 공장을 방문해 직접 제조 과정 확인), 사후 관리(품질보증 마크 획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들이 QAS 마크 부착 상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랜덤 샘플링 및 공장 방문 검사 등))를 기준으로 제품 검사를 실시한다.

##### ○ TGA 인증 제도

- 호주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료 장비들은 호주 식약처(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의 관리 제도인 ARTG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ARTG 등록을 위한 의료 기기는,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5가지(Class I, Class IIa, Class IIb, Class III, AIMD) 카테고리 구분하며, 제품의 카테고리별로 제품 등록에 대한 시간, 비용 및 요구 조건 등이 달라진다. 해외 업체가 제품에 대한 CE 인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TGA의 단계별 확인 절차를 거쳐 ARTG에 등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TGA를 통해 순응 평가 인증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를 신청해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 호주 TGA의 ARTG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조업체가 직접 하지 못하고 호주 현지에 적을 둔 업체를 지정(스폰서)해 대신 진행해야 한다.

- 순응평가 인증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ion)는 제조업체에 발행되는 것이며 호주 내 스폰서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 순응평가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호주 식약처 소속 담당자가 해외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공장에 방문하기도 하며 이때 드는 항공, 숙박 등의 모든 비용은 제조업체에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프로세스는 비교적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비경제적이므로 호주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CE 인증을 획득한 후 TGA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CE 인증을 이미 보유한 기업의 경우 현지 스폰서를 통해 TGA에서 제공하는 E-Business Service에 계정을 신청하고 제품의 위험 레벨에 따라 Class I 에 속하는 제품군과 Class I (Sterile), Class I (Measuring), Class II a, Class II b, Class III, AIMD에 속하는 제품군으로 나뉘어 진행하면 된다. 화장품 중 질병, 결함, 상처를 예방, 진단, 치료하거나 완화하는 기능 및 생리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TG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즉,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질환을 예방하는 선크림(Sunscreen), 주름개선, 노화방지와 같은 기능성 화장품들은 TGA 인증 필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수입업체와 협업하여 인증 필요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 2) 인증 관련 기관

- 호주 표준 규격 제정 기관: 스탠다드 오스트레일리아(Standards Australia)
  - 주소: Level 10, the Exchange Centre 20 Bridge Street. Sydney NSW 2001
  - 전화: (국내) 1800 623 503, (해외에서 걸 때) (61-2) 8206 6060
  - 팩스: (61-2) 9237 6010
  - 이메일: researchsydney@standards.org.au
  - 웹사이트: <http://www.standards.org.au>
  
- 주요 인증 대행 기관 : 사이 글로벌(SAI Global) 한국지사
  -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리더스 타워 1104호(우편번호153-023)
  - 전화: 02 582 1823
  - 팩스: 02 582 1826
  - 이메일: korea@saiglobal.com
  - 웹사이트: [www.saiglobal.com](http://www.saiglobal.com)
  
- 의료기기 인증 기관 : 호주 식약처(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 주소: 136 Narrabundah Lane, Symonston ACT 2609
  - 전화: (61-2) 6232 888
  - 팩스: (61-2) 6232 8605
  - 이메일: info@tga.gov.au
  - 웹사이트: [www.tga.gov.au](http://www.tga.gov.au)

## TBT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저기준 (에어컨 및 열 펌프) 결정

2017년 8월 25일, 호주 환경에너지부는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정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WTO 및 한국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에 따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호주/뉴질랜드 표준을 다음 규정에 통합하여 에어컨 에너지 효율 평가에 계절별 에너지 효율비(SEER)를 사용한다.
  - AS/NZS 3823.4.1:2014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4.1: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계절별 성능지표에 대한 시험 및 계산 방법 - 냉방기간 에너지 효율 (ISO 16358-1:2013, MOD) - 수정 포함
  - AS/NZS 3823.4.2:2014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4.2: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계절별 성능지표에 대한 시험 및 계산 방법 - 난방기간 에너지 효율 (ISO 16358-2:2013, MOD) - 수정 포함
  - AS/NZS 3823.1.5:2015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5: 단일 배기덕트인 비덕트형(Non-ducted) 이동형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 AS/NZS 3823.1.1:201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1: 단상 에어컨 및 열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5151:2010, MOD)
  - AS/NZS 3823.1.2:201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시험방법 - 덕트형(Ducted)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13253:2011, MOD)
  - AS/NZS 3823.1.3:2005: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3 - 수열원 열 펌프- 물-공기 및 염수-공기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13253:2011, MOD)
  - AS/NZS 3823.1.4:201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4: 다중 분할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 (ISO 13256-1, Ed.01 (1998) MOD)

이 표준들 역시 다음의 시험 표준을 대체한다.

- AS/NZS 3823.3:2002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3: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의 성능 계산 요구사항
- AS/NZS 3823.2:2013: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2: 에너지 라벨링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요구사항
  
- 기존의 에너지등급라벨 대신 지역별 에너지등급라벨(Zoned Energy Rating Label)을 사용하고, 계절별 에너지효율등급을 알린다. (최대 30kW 용량의 제품)
  - 현재 라벨 표시가 요구되는 제품은 (즉: 이중 덕트 이동형 에어컨을 포함한 단상 비덕트 에어컨) 기존의 에너지등급라벨 대신 지역별

에너지등급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 현재 라벨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 제품은 (주로 단상 덕트 및 삼상(three-phase) 장치) 라벨을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의 SEER 등급을 에너지등급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용량이 30kW 를 넘는 제품은 라벨을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의 SEER 등급을 에너지등급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물리시험 보고서에 근거한 SEER 열 등급은 수의로 제공할 수 있다).

- 이동형 에어컨 (단상)은 AS/NZS 3823.1.5:2015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1.5: 단일 배기덕트인 비덕트 이동형 공냉식 에어컨 및 공대공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평가에 따라 검사한 시험 결과가 부착된 지역별 에너지등급라벨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o MEPS 요건 변경(이동형 에어컨)

- 이중 덕트 장치: 에너지효율(EER)과 성능계수(COP)에 근거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MEPS)을 2.5 수준으로 줄인다. (현재 요구조건에 대해 AS/NZS 3823.2:2013 전자제품의 성능 - 에어컨 및 열 펌프 - 파트 2: 에너지 라벨링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요건을 참조한다.)

- 단일 덕트 장치: 이 장치에서도 EER 과 COP 에 근거하여 2.5 수준의 MEPS 를 쓴다. 특히 상업용/산업용 에어컨 용량이 65kW를 넘는 에어컨인 경우, 연간 에너지효율(AEER)과 연간 성능계수(ACOP)에 근거하여 MEPS를 2.9로 한다.

o 기타 변경 사항

- H2 MEPS 삭제: H2 시험지점인 MEPS 수준을 따로 충족할 필요가 없다.

- 다중-분할 등록: 이미 등록된 다중 실외 장치들로 구성된 시스템은 복합 시스템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 실외 장치 전용 공급품: MEPS 요건은 시스템으로 판매되지 않는 실외 장치 공급품에 적용된다.

- 30kW 미만 제품의 소음 테스트 기준: EN 12102:2013 실내 냉난방용 전동 압축기가 장착된 에어컨, 액체 냉각 패키지, 열 펌프, 제습기. 공기소음 측정. 음력 레벨 측정이 이용될 것이다.

- 소음 등급 시험지점: 정격용량 냉방시험인 경우 T1(35 °C) 또는 난방 전용 장치인 경우 H1 (7 °C)의 동작점에서 측정

- 소음 시험 요건:

- 비덕트 분할 시스템: 실내 및 실외 소음 레벨

- 덕트 장치(분할 장치와 통합 장치 모두): 실외 소음 레벨

- 비덕트 통합(unitary) 장치 (예: 창/벽): 실내 및 실외 소음 레벨

- 완전히 (냉난방) 조절된 공간에 놓인 단일 및 이중 덕트 '이동형' 통합 장치: 실내 소음 레벨

- 다중-분할 시스템: 등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합에 근거를 둔 단일 실외 장치의 실외 소음 레벨

- SEER 저하계수 변경: AS/NZS 3823.4 의 저하계수가 기본값 0.25 로 고정된다.

- 비가동(non-operative) 전력 측정: MEPS 기준에 대한 비가동 전력(예: 대기)은 AS/NZS 3823.4 의 가중평균 소비전력(Pia)으로 바뀐다.

- H2 및 H3 시험: 공기 엔탈피 시험 또는 실험 열량계 시험은 모든 에어컨에 대한 H2/H3 (2 °C/- 7 °C) 시험으로 인정된다.

- 기본 SEER 값 사용: 29 °C 냉각시험에서 정속(Fixed speed) 제품들은 기본값을, 변속(variable speed) 제품들은 정속 시험지점을 사용할 수 있다.

- 30 kW 넘는 제품의 시험결과 인증: 유로벤트(Eurovent), 미국냉난방공조협회(AHRI) 인증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 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 30kW 넘는 제품의 시뮬레이션 시험: 물리시험과 결과가 동일하다고 증명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다.

- 최대 냉각 시험: 더 이상 라벨이 붙은 제품의 요건이 아니다.

- 상업용 제품의 등급 분류: 상업용인지 또는 가정용인지를 기준으로 제품의 등급을 나눌 수 있다.

## 다. 관세제도

### 관세제도 개요

호주는 1983년 브뤼셀에서 체결된 통일상품 분류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in Brussels)에 따라 1988년 1월부터 국제통일 상품 분류제도(H.S. System)를 채택, 운용하고 있다. 관세구조는 크게 표준관세(Standard Tariff)와 양허관세(Concessional), 표준관세는 다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구분된다.

관세율의 경우, 산업구조 개편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관련 국가들에는 대부분의 품목에 점진적 무관세를 적용하나, 일반적 기본 관세율은 5% 정도다.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보다 조금 낮은 특별관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 관세율 알아보는 법

일반 관세율은 호주 외무부 홈페이지(<https://archive.homeaffairs.gov.au/busi>)에 접속해 Cargo support, trade and goods 항목 하단의 Tariff classification of goods를 클릭, 화면 왼편의 2012 Tariff classification >Schedule 3 - Listing of Goods, their classification and duty rates 이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Schedule3 목록에서 찾고자 하는 HS Code에 해당하는 Chapter 00 - Goods 을 클릭하면 하위 코드별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호주와의 FTA 체결국으로 일반 관세율과 함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는 FTA 관세율이 적용되며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개설한 FTA 포털(<https://ftaportal.dfat.gov.au/>)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당 포털은 품목에 따른 FTA 체결국들에 대한 양방 관세율 및 수출입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법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1번에 HS Code 또는 제품명을 영어로 기입, 2번에 대호주 수출입 여부를 선택한 후, 3번에 상대국(한국 또는 기타 호주 FTA 체결국)을 지정하여 검색하면 된다. 관세 정보는 HS Code 6자리부터 확인 가능하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 항목은 <b>"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b>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	--

## 5. 통관 및 운송

### 가. 통관제도

#### 통관 유형별 절차

##### 1) 통관절차

호주의 수입 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신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지연 등 특별히 까다로운 점은 없으며 소요 시간도 짧은 편이다. 과거에는 목재 포장재에 대한 검역 서류 미비, 항만 노조의 잦은 파업 등이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화물 도착 전 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해 수속이 가능하며 세관이나 검역소의 추가 검사 요구를 제외한 모든 화물은 수입 도착 후 바로 수출 상태 그대로 수입자에게 전달된다.

##### ○ 목록통관

-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소액면세통관이 가능하며 X-ray 검사만으로 간단히 통관되므로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는 물품에 비해 처리속도가 빠르다.

##### ○ 일반통관(정식수입신고)

- 호주로의 정식 통관을 위해서는 산업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FTA 관세 혜택 적용 시 필요) 등의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 기존 연 매출 75,000호주달러 미만의 기업은 1,000불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텍스(10% GST)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2018년 7월 1일부 해당 규정이 변경되어, 이후 호주로 수입 및 구매되는 모든 온오프라인 구매품목에 10% GST가 부과된다.

##### 2) 수입 전 준비사항

○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 세무소(ATO -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서 발행되는 번호로 세관 수출입 신고 시 세관 고객 번호(CCID - Customs Client ID)로 자동 전환되며 관세와 함께 지불되는 모든 세금(GST/WET/LCT 등)이 세무소에 기록된다.

ABN이 없는 개인 화주 경우에는 개인 기본 신상 기록에 준해 수출입신고 세관 고객번호를 부호받아 진행된다.

물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전문자료) : 정확한 품목 분류 번호(HS Number)로 수입 시 관세 감면 혜택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수입 신고 시 세관 또는 관련 관계 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 허가 여부를 사전 검토해 통관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수출자와의 거래 계약서(Offer Sheet/pro-formal invoice) : 수입시 발생하는 비용 산출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함으로써 판매가격 계산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세관에서 구입단가에 대한 문제 발생시 거래 증명서로 제출이 가능하다.

#### 통관 시 유의사항

##### 1) 수입물품 검증 및 표기

호주는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에서 관할하는 관세법(Customs Acts), 검역법(Quarantine Acts)에 의거해 수입 통관이 일차적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수입상품(Imported Goods)에 대해서는 The Commerce(Trade Description) Act 1905, The Commerce(Imports) Regulation 1940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되며 이에 필요한 정확한 물품 표기(Trade description)를 요구하고 있다.

- 원산지, 수량, 무게, 크기, 생산자, 내용물 외 일반 구입자에게 필요한 물품에 대한 기본 자료를 영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이 상품 표기는 일반적으로 구입자가 구입 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에 표기되어야 한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는 저작권과 관련된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 전 변호사 또는 관세사와 사전 수입 판매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다. 저작권 소유자(또는 대행자)는 세관에 소유 상표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수입 통관 시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반입을 불허할 수 있다.

- 음식물의 경우 호주 음식물 기준법에 따라(Food Standards Code) 필요한 라벨 작업이 되어 하며 호주 음식물 라벨에 표기되는 영양 정보(Nutrition Information)표시 방식은 한국/미국과 달리 유럽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2) 운송제도

호주의 운송 절차는 타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산화되어 있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해상물류사(선사 및 항공사)는 운송 절차를 전산화하고 있어 온라인으로 실시간 운송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운송 비용은 해상물류의 경우 20FT(Dry) 컨테이너의 경우 약 2,000미달러, 40FT경우는 3,000미달러 정도 소요되며 항공운송일 경우 1kg 당 약 4미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해상 및 항공 운송 비용 외에도 통관 및 내륙 운송 비용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o Hana Express(한국 업체)

주소	9/6-20 Braidwood St. Strathfield South NSW 2136
전화번호	+61-2)9742-5788
이메일	info@hanarods.com
홈페이지	http://hanaexp.com

### o PNL Global Logistics(한국 업체)

주소	87 Egerton Stree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61-2)9700-1188
이메일	info@pnlglobal.com.au
홈페이지	http://www.plfreight.com

### o Pantos Logistics Australia(한국 업체)

주소	Unit 7, 4 Avenue of The Americas Newington NSW 2127
전화번호	+61-2)8305-3711
이메일	info@pantos.com
홈페이지	http://www.pantos.com

### o Qube

주소	Level 27, 45 Clarence Street Sydney NSW 2000
전화번호	+61-2)9080-1900
이메일	logistics@qube.com.au
홈페이지	https://qube.com.au

◦ Linfox

주소	55 English Street, Essendon Fields, VIC 3041
전화번호	+61-3)8340-1000
이메일	customer_enquiries@Linfox.com
홈페이지	http://www.linfox.com

<자료원 : 포워딩 및 통관업체별 홈페이지>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III. 투자

## 1. 투자환경

### 가.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 1) 투자 관련 법규

외국인이 호주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승인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을 판단하는 법규로 외국인인수합병법이 적용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칙, 정의, 외국인 투자신고, 벌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아래 법령 전문은 <http://www.comlaw.gov.au>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외국인인수합병법)
-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s 1989 Foreign Takeovers (Notices) Regulations

아울러 호주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와 관련된 법규는 아니나 호주 상법상 투자자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음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통상 유한회사(Proprietary Company, 주주의 수가 50명 이하인 비상장기업) 형태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이때 등록조건으로 최소 1인의 대표이사(Director)를 신고하여야 하며 대표 이사 중 최소 1인은 반드시 현지 거주자(Australian resident)일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현지 거주자(Australian resident)란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의미하는데, 이 같은 조건으로 인해 초기 법인 설립 시 반드시 현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파트너로 선임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정보 유출이나 인력 채용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본사의 개설 요원 1명과 현지에서 채용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1인이 공동 대표이사로 등록하게 된다.

#####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제도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FIRB)는 연방정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의 자문기관으로 투자신청서 심사과 승인 여부에 관여하며 일부 외국인 투자 등록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호주 내 거주용 부동산이나 농·토지에 투자할 경우,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 등록이 필수적이다.

#### 투자인센티브

##### 1) 투자 인센티브제도 개요

호주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는 호주 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 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호주무역투자진흥원(Austrade)은 호주 내 무역과 투자 촉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각 주 정부는 호주 내 법인 설립 및 사업 확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유망지역과 업종 등을 신규 투자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지역, 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각 관할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호주 정부는 Grants and assistanc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투자자 및 기업들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직접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분야로는 신생기업 및 기업 확장, 리서치 등의 특정 활동, 세금 감면, 산업보조 등으로 다양하다. 단, 기간제로 운영되는 인센티브 제도도 많으므로 각 제도의 적용 기간 및 변동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2) 연구개발(R&D) 투자에 관한 세금 혜택

호주 연방정부는 R&D 투자에 관한 세금 감면혜택을 2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에 따라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개발 활동도 세금감면 혜택 대상에 적용이 가능하다. 동 혜택은 호주 산업부 산하 AusIndustry와 국세청(ATO)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세금감면 신청 전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연구개발 활동은 반드시 AusIndustry에 등록해야 한다.

- R&D 관련 비용 세금환급제도: 연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The Research & Development Tax Incentive는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분적으로 상쇄시켜준다. 기업의 규모, 산업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연구개발 세금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기업들 중 연 매출이 2천만 호주달러 이하이며, 소득공제 규제되지 않은 업체는 45%의 환부세가 지원된다. 연 매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인 기업들에게는 40%의 세금면제가 지원되지만, 환급은 불가능하며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 3) 외국 투자자에 대한 연방정부 및 주 정부 지원

- 주요 투자 인센티브(내외국 기업, 업종 구분 없음): 2018년 10월 기준 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는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 (VCLP)' 하나만 진행 중이다. Venture Capital Limited Partnerships (VCLP)은 외국인들의 호주 벤처사업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들이 투자를 통해 취득한 이익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단, 외국인 투자자는 호주 내 등록된 법인이거나 호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하며 등록펀드의 규모는 1,000만 호주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 제한 및 금지(업종)

### 1) 자원 부문 투자 규제

- 광산 채굴권 신청 절차

호주의 광산 채굴에 대한 개발사업 인가 및 허가는 각 주(6개: NSW, VIC, QLD, WA, SA, TAS) 및 NT(Northern Territory: 북호주 행정자치구역)의 에너지 자원부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내용과 적용에 있어 대동소이하다. 광물 탐사를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대부분 해당 주의 에너지 자원부 장관에게 사업 계획, 탐사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 사전 인가(Licence)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기업이나 단체는 정부 기관지 혹은 지역 일간지를 통해 광물 탐사 작업과 관련해 공표(Public notification)할 의무가 있다.

한편, 탐사 및 발굴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발굴 지역의 지표면 파손 및 변형에 대한 비용 등 보상 비용을 해당 지대의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TAS주와 NT의 경우 일부 비용을 사전에 예탁하여야 한다. 6개 주와 NT 모두 탐사 발굴 신청 지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NSW주와 VIC 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연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6개 주 모두 광물 개발 유보 라이선스(Retention Licence)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라이선스는 광물을 발견한 기업 혹은 단체로 하여금 필요시 개발가치가 있을 때까지 발굴 혹은 채광(採鑛)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유보 라이선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잠재적 가치가 있는 광물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유보 라이선스의 인가 요건은 위에서 언급된 탐사 신청 절차와 유사하다.

호주 전 지역에서 채광 임대권(Mining Lease)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탐사 라이선스 혹은 유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우선권이 주어진다. 퀸즐랜드 주(QLD)의 경우 채광 임대권 신청자는 적절한 사전 보유권(Pre-requisite tenure)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채광 개발 계획에 대한 아웃라인과 세부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주 정부 기관지를 통해 광산 개발 소식을 알리는 태스매니아(TAS)주를 제외한 호주의 전체 주에서는 광산 개발 신청 시 공표의무가 주어진다.

- 관련 정책 및 법규

호주 자원정책 관련 법규는 각 주의 개별 관할 사안으로서 해당 주의 관련 법규를 1차적으로 적용하나 호주 연방법과의 충돌 발생 시 연방 법이 우선 적용된다. 호주 채광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호주(WA: Western Australia) 주의 관련 법규들이 호주의 자원 정책 관련 법규로서 좋은 예시가 되고 있는바, 아래의 5개 법이 적용되고 있다.

- Mining Act 1978(채광법)
-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환경보호법)
- Land Administration Act 1997(토지관리법)
- Native Title Act (NTA) 1993(원주민 토지 보호법)
- Offshore Minerals Act 1994(the OM Act, 역외 광물 자원 보호법)

## 2) 환경 관련 규제

국가 경제의 상당부분이 관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호주에서 환경 보호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은 물론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중요 사안이다. 호주 정부의 환경 정책은 채광과 원전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한 감정(Assessment)과 방지 그리고 훼손된 지역의 환경 재활 프로그램을 관할하고 있다. 각 주의 주정부들은 연방 정부와의 공조 아래 호주 관광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의 각 주(State) 및 행정자치구역(Territory) 정부들은 역내는 물론이고 해안 기선(Baseline) 으로부터 3해리까지의 해수역에 있어 광물 자원 관리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우선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환경 파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호주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법규로 하기 2개 법이 있다.

-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the EPBC Act; 환경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법)
- Petroleum (Submerged Lands) Act 1967 (PSLA, 석유 및 침수지 보호법)

## 3) 광업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세제상 규제

호주에는 현재 자원산업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통일된 세제는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일반 세제 법규(Government taxation legislation) 및 각 주별 광산업 관련 세제(State mining taxation)를 혼용해 광물 및 에너지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호주의 광산업 및 석유 산업 관련 법인세는 일반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30%의 법인세율(Corporate rate)이 일괄 적용되고 있다(단, 매출액이 2백만호주 달러 이하인 기업은 28.5% 적용). 고용주에게는 일반업체와 마찬가지로 지급 급여세(Payroll tax),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변동세율 적용) 그리고 부가 급여세(Fringe Benefits Tax: FBT)가 부과된다. 아울러 호주 내 수입되는 전체 상품에 대해 10%의 부가세(Goods & Services Tax: GST)가 징수된다.

## 나.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 1) 개요

호주는 넓은 국토 면적 대비 인구의 수가 적고 5~6개의 대도시에 분산 집중되어 있는 특성상 대부분의 산업 공단은 대도시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다. 이러한 산업 공단들은 호주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것이 없으며, 주로 주(State) 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성된 것이며, 그중 일부는 민간개발업체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각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의 개발 및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로 산업 공단을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현재 호주 내에는 다수의 산업공단이 있으며 그 가운데 테크놀로지 공단(Technology and Research Park)와 일반 단지(Industrial

Park)로 나뉘어 존재하고 있다. 이들 공단은 전문적인 제조업에 치중돼 있다기보다는 비즈니스 파크의 개념으로 일반 사무용 오피스 건물 이 주를 이루며 몇몇 공장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개발 목적상의 산업 밀집 개발 지역의 성격이 짙다.

호주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공단의 형태는 Technology and Research Park이다. 일반적으로 산학 협동을 통한 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 구 내 또는 주변에 위치하며, 대부분 주 정부와 대학교가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다. 공단 입주 업체들에게 지방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직접 금액지원 등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다.

## 2) 기술산업단지(Technology and Research Park)

많은 지역에 크고 작은 다양한 Technology and Research Park들이 존재하고 있다. Technology Park은 대학교나 리서치센터 등의 시설과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이전, 정보공유, 및 사업발전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되며 더 나아가 호주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 크고 작은 다양한 Technology and Research Park들이 존재하고 있다.

Technology Park은 대학교나 리서치센터 등의 시설과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이전, 정보공유, 및 사업발전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되며 더 나아가 호주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 Australian Technology Park(ATP)

- 시드니 근교에 위치한 대표적인 기술산업단지
- 입주 절차 및 조건
  - 평가 기준 통과: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윤 창출 가능성과 지적 재산의 가치 등을 심사하며, 사업 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3개월간 Pre Incubator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재정 능력: 2년간 임차료 이외에 10,000호주달러(6,000달러 정도)의 경비가 소요됨
- 입주 시 비용
  - 임차료: 평방미터당 연간 520호주달러
  - 면적: 초기 단계 시 3.5평방미터, 중기 60평방미터, 말기 125평방미터
- 입주 시 혜택
  - 일반 Business Incubator시설에 입주하는 것보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Austrade(국영 무역진흥기관)와 AusIndustry(호주 연방 공업청)에서 제공하는 기술연구 개발비를 지원받기가 용이해짐
  - 최고 2년 동안 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대학의 주요 연구 분야 내에 들면 연구보고 (인력,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산업단지

### ○ 오스트레일리안 테크놀로지 파크(Australian Technology Park)

규모	13.9ha
위치	Locomotive St, Eveleigh NSW 2015
임차료	평방미터당 약 520호주달러/연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 +62-2 8398 5710</li> <li>○ 이메일: amanda.easton@mirvac.com</li> <li>○ 홈페이지: https://atp.mirvac.com</li> </ul>

### ○ 캔버라 테크놀로지 파크(Canberra Technology Park)

규모	5.8ha
위치	49 Phillip Avenue, Watson ACT 2602
임차료	미공개

<b>관할기관 및 연락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 +61-2 6162 5100</li> <li>○ 이메일: management@canberratechpark.com</li> <li>○ 홈페이지: https://canberratechpark.com.au</li> </ul>
-------------------	--

○ 테크놀로지 파크 아델레이드(Technology Park Adelaide)

<b>규모</b>	3.5ha
<b>위치</b>	Mawson Lakes Blvd, Mawson Lakes SA 5095
<b>임차료</b>	미공개
<b>관할기관 및 연락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 +61 8 8260 8111</li> <li>○ 이메일: julie.bria@sa.gov.au</li> <li>○ 홈페이지: https://techpark.sa.gov.au</li> </ul>

<자료원 : 산업단지 별 홈페이지>

**주요 지역별 여건**

○ 퀸즐랜드(Queensland, QLD) 주

- 면적: 1,852,642km<sup>2</sup>
- 인구: 500만 명
- 주도: 브리즈번(Brisbane)
- 주요 기관: 퀸즐랜드 주정부
- 주요 산업: 관광산업, 농수산물 수출 등
- 비고: 퀸즐랜드 주는 기업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으로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단위의 투자 유치 기구가 다수 활동하고 있다. 브리즈번을 포함한 남동 지역이 투자 유치 활동에 가장 활발하며 브리즈번 시(Brisbane City Council)이 운영하는 Choose Brisbane이 기업 유치 활동을 담당한다. Choose Brisbane은 안정적인 정치환경 및 경제환경, 빠른 인구성장, 다수의 민간,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우호적인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등을 내세우며 투자유치에 활발히 활동 중이다. 또한 ITQ(Trade and Investment Queensland)는 퀸즐랜드정부의 무역투자 촉진 업무를 담당하며 전 세계 15개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 서호주(Western Australia, WA) 주

- 면적: 2,645,615km<sup>2</sup>
- 인구: 259만 명
- 주도: 퍼스(Perth)
- 주요 기관: 서호주 주정부
- 주요 산업: 광산업, 기계, 철강 및 운송기기 산업
- 비고: 2009년 이후 세계적인 지하자원 수요 증가에 힘입어 서호주 주의 투자 기회 및 투자 대상 지역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2013년 이후 자원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지하자원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서호주 지역에 대한 투자 환경은 긍정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원 및 에너지 원자재 투자 및 생산량의 급증으로 서호주는 광업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글로벌 기업들의 목적지가 될 전망이다. 철광석 생산이 확장되며 관련 장비,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원되고 있다. 원격제어 채굴과 같은 새로운 광업기술이 서호주에서 시험되고 있다.

서호주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어 인력조달이 어려워 만성적인 기술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State Migration Centre가 2006년 설치되어 해외로부터의 기술 인력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NSW) 주

- 면적: 809,444km<sup>2</sup>
- 인구: 796만 명
- 주도: 시드니(Sydney)
- 주요 기관: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호주무역투자진흥공사, 관세청, 증권투자위원회, 증권거래소, 호주연방법원 등
- 주요 산업: 양모, 쇠고기, 곡물, 설탕, 낙농식품, 각종 과일
- 비고: 해마다 다수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23년간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여왔으며, 호주경제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 음식, 정보통신기술, 제조 등 다양한 산업을 포용하여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주둔하고 있으며, 빅토리아 주와 같이 매우 높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다. 투자유치 담당 기관은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산하의 Invest in NSW가 맡아 활동하고 있다. NSW 주 정

부는 2020년까지 약 80억 호주달러의 인프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는 서부 시드니 공항에 글로벌 비즈니스 게이트웨이이자 첨단지구인 Western Sydney Aerotropolis 건설 프로젝트이다.

○ 노던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NT)주

- 면적: 1,420,970km<sup>2</sup>
- 인구: 25만 명
- 주도: 다윈(Darwin)
- 주요 기관: 노던 테리토리 주 정부
- 주요 산업: 양모, 쇠고기, 곡물, 설탕, 낙농식품, 각종 과실
- 비고: 호주 Northern Territory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강수량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농산물 생산에 최적화된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호주 정부가 농업 분야를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데 미개발 토지가 많은 호주 북부 NT 주는 외국인 투자자가 비교적 수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호주의 폐쇄적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NT 주와 같은 인구 저밀도 지역은 농업종사 직업군(Farmer)의 이민 기회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2. 외국인직접투자

###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56,765.52	40,969.57	20,462.92	47,755.97	46,367.98

<자료원 : UNCTAD Stat>

###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1,441.34	463.33	-20,055.74	2,320.82	4,881.36

<자료원 : UNCTAD Stat>



국가정보(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3. 한국기업 투자

####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4	71	15	844,230	139	1,672,937
2015	77	13	678,925	137	895,928
2016	118	38	1,595,405	174	1,298,850
2017	93	23	532,517	149	680,124
2018	84	10	143,591	70	220,04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 2014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9	1	9
광업	30	1	508,237	82	1,566,034
제조업	9	3	44,865	14	42,06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1	1,859	1	1,857
건설업	2	0	33,891	4	584
도매 및 소매업	9	3	7,785	14	6,341
운수 및 창고업	1	1	86,300	1	9,950
숙박 및 음식점업	1	0	185	1	46
정보통신업	4	1	126	4	126
금융 및 보험업	5	1	3,309	4	3,041
부동산업	4	0	154,018	6	41,33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2	456	2	46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2	2	3,190	5	1,092
---------------------------------	---	---	-------	---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5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3	1	1,912	6	666
광업	37	0	509,039	78	696,929
제조업	8	3	14,493	12	17,363
건설업	1	0	197	0	0
도매 및 소매업	9	1	6,474	15	5,997
숙박 및 음식점업	1	1	224	2	221
정보통신업	3	2	549	3	389
금융 및 보험업	3	0	17,548	0	0
부동산업	7	3	124,923	8	172,33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3	0	3,339	11	1,802
교육 서비스업	1	1	127	1	12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1	100	1	10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6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763	7	451
광업	48	3	657,684	87	514,353
제조업	14	6	21,443	12	20,16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	2	21,748	3	1,122
도매 및 소매업	15	9	4,036	18	3,545

운수 및 창고업	3	3	544,149	4	407,167
숙박 및 음식점업	3	2	550	4	351
정보통신업	4	0	1,284	4	652
금융 및 보험업	10	6	180,980	12	187,850
부동산업	7	2	160,183	8	160,99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2	575	4	59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2	1,091	9	680
교육 서비스업	1	1	571	1	57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0	348	1	34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7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2	1	3,941	4	4,141
광업	36	1	139,232	62	319,707
제조업	15	2	42,385	24	26,88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	2	17,412	6	38,269
건설업	3	2	1,135	3	1,139
도매 및 소매업	5	3	55,433	8	55,644
운수 및 창고업	2	1	3,063	6	4,088
숙박 및 음식점업	1	0	155	2	61
정보통신업	4	3	1,027	7	1,358
금융 및 보험업	9	2	143,248	8	121,854
부동산업	8	6	124,096	12	106,10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0	1,015	6	49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0	375	1	37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1	1	605	2	722
광업	13	0	22,393	25	105,561
제조업	7	1	72,499	12	68,80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7	1	18,580	7	16,558
건설업	1	0	2,909	1	2,909
도매 및 소매업	9	4	3,869	7	2,010
운수 및 창고업	0	0	0	2	465
정보통신업	2	1	791	4	898
금융 및 보험업	41	0	21,501	5	21,194
부동산업	1	1	260	3	88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1	184	2	3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GS건설호주법인

진출년도	201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건설업
모기업명	GS건설(주)

○ GS글로벌호주법인

진출년도	198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철강판재류, 석유화학, 석탄
모기업명	GS글로벌(주)

○ KEB하나은행시드니지점

진출년도	198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취급분야	은행업
모기업명	KEB하나은행(주)

○ LG상사호주법인

진출년도	198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석탄광산 투자, 석탄 생산물 해외판매
모기업명	LG상사(주)

○ LG전자(주)호주법인

진출년도	198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가전제품
모기업명	LG전자(주)

○ LS전선호주지사

진출년도	201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한국 제품의 호주 직판 혹은 대행 판매, 관련 매매 거래의 서비스 제공
모기업명	LS전선(주)

○ SK네트웍스호주자원법인

진출년도	199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석탄광산 투자
모기업명	SK네트웍스(주)

○ 금호타이어

진출년도	197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타이어
모기업명	금호타이어(주)

○ 기아자동차호주판매법인

진출년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판매 및 서비스
모기업명	기아자동차(주)

○ 넥센타이어

진출년도	2012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신차 타이어
모기업명	넥센타이어(주)

○ 농심호주법인

진출년도	201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식품
모기업명	농심(주)

○ 대한전선호주법인

진출년도	200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EHV 및 MV/LV 케이블, 엔지니어링 및 설치 서비스
모기업명	대한전선(주)

○ 대한항공(주)시드니지점

진출년도	1990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항공운수업
모기업명	대한항공(주)

○ 모트렉스호주법인

진출년도	2012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모기업명	모트렉스

○ 바텍글로벌

진출년도	201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치과용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기
모기업명	바텍글로벌(주)

○ 삼성물산건설부문호주지점

진출년도	2012
진출형태	건설 및 공사업
업종	건설 프로젝트
취급분야	삼성물산(주)

○ 삼성물산상사부분

진출년도	2011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무역업 (화학, 철강, 섬유 등)
모기업명	삼성물산(주)

○ 삼성전자(주)호주법인

진출년도	198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주)

○ 신한은행

진출년도	201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취급분야	금융 서비스
모기업명	신한은행

○ 아시아나항공시드니지점

진출년도	1995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항공운수

모기업명	아시아나항공(주)
------	-----------

○ 오스템호주법인

진출년도	200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치과 의료 기기
모기업명	오스템임플란트(주)

○ 우리은행시드니지점

진출년도	2013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취급분야	금융서비스
모기업명	우리은행(주)

○ 이노션월드와이드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광고 마케팅
모기업명	이노션월드와이드(주)

○ 포스코대우시드니지사

진출년도	1968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석탄, 철광석, 스크랩 및 철강제품, 화학제품, 기계류 및 비철금속, 곡물 수출입
모기업명	포스코대우(주)

○ 포스코호주

진출년도	1981
------	------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철강/비철강원료 투자자산 관리, POSCO 및 계열사 철강제품 수입 및 오세아니아 시장판매
모기업명	포스코(주)

○ 한국관광공사시드니지사

진출년도	1979
진출형태	지점
업종	기타
취급분야	관광 홍보
모기업명	한국관광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호주법인

진출년도	199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호주 내 유연탄 프로젝트 운영 및 투자를 통한 발전용 유연탄 생산
모기업명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산업은행시드니사무소

진출년도	2015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취급분야	은행업
모기업명	한국산업은행

○ 한국전력공사호주현지법인

진출년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발전용 유연탄 (생산전)

모기업명	한국전력공사
------	--------

○ 한국중부발전호주법인

진출년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발전용 석탄
모기업명	한국중부발전

○ 한국타이어오스트레일리아

진출년도	198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한국타이어(주)

○ 현대모비스호주법인

진출년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호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및 현대자동차 대리점 AS 부품
모기업명	현대자동차그룹

○ 현대상선호주법인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해운업
모기업명	현대상선(주)

○ 현대자동차(주)호주판매법인

진출년도	2003
------	------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현대자동차(주)

○ 현대종합상사호주법인

진출년도	198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한국 제품의 호주 직판 혹은 대행 판매, 관련 매매 거래의 서비스 제공
모기업명	현대종합상사(주)

<자료원 : KOTRA 시드니 무역관>

		<p>국가정보(투자-한국기업 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b>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b>"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 4. 투자진출방식

### 가. 투자진출 형태

#### 법인

현지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초기에 세무상 여러 장점이 있으며, 초기 투자 이후 사업체에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법인세 (30% 또는 27.5%)를 납부한 이후에 지급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 이런 이유로 많은 외국 기업이 호주 현지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해 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인원 중 현지 영주권자 이상의 이사진은 보통 법인 설립 대행업체에서 지원하므로 외국인이 참여 불가능한 기업 설립 형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1) 현지법인

현지 법인은 'Pty Limited'로 표시하게 되며, 호주의 회사 등록 기관인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에 등록된다. 등록 완료 시 ACN(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부여받게 되며, 회사와 관련해 등록된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일 년에 한 번씩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영업 이익 발생 시 법인세율인 30%를 호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며, 2018년 7월부 연 매출액 A\$ 5,000만 미만의 기업은 소규모 기업으로 분류돼 법인세 27.5%를 납부한다. 순이익을 한국 본사로 배당금 형식으로 보낼 경우 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이 없다. 그러나 세금 공제 전 배당금일 경우 배당금의 15%를 호주 국세청에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로 내야 한다. 한국으로 이익금 전부를 송금할 수 있으며 상한선은 없다.

Pty Limited는 호주상법(Corporations Act)상 비상장법인을 의미하며 회사 설립 시 기본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대표 (Director)는 1인 이상 반드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주주는 법인 및 개인 모두 가능함.
- 최소자본금 A\$ 1 이상(1주도 가능)

##### 2) 외국 법인

외국 법인의 설립 역시 현지 법인과 마찬가지로 연회비 지불 및 회사 등록 내용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실제 사업형태는 현지법인과 유사하나 구분상 지사(외국 법인)의 형태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현지 법인과 동일한 절차와 의무를 가진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 호주 회사 주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호주에 등록된 외국 법인은 호주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호주 내에서 이익의 30%(연매출액 A\$ 5,000만 미만, 법인세 27.5%)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현지법인과 동일하다.

2018년 7월 이후 변경된 ASIC 비용은 아래와 같다.

- 등록 시(ARBN 신청) : A\$ 488
- 매년(Annual Review Fee) : A\$ 263(Pty Ltd), A\$ 1,224(지점)

#### 지사

호주의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의 지점(Branch)의 형태로 호주에 진출할 경우, 외국 법인(Foreign Registered Company)으로 분류되게 된다. 법인의 등록도 위의 현지 법인과 마찬가지로 회사 등록 내용 변경 신고 및 연회비 지불의 의무가 있다. 이 경우 ACN(Australian Company Number)을 대신하여 ARBN(Australian Registered Body Number)을 신청하여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후로는 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외국 법인이 호주 내 지점을 설립할 경우, 본사는 호주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므로, 본사의 현재 이사진(개인 신상)과 주주명부 및 회사 정관, 등기부 등본 등이 필요하며, ASIC에 제출 시 위의 서류를 모두 번역, 공증(Notary Public)하여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에 있는 영주권자 이상인 사람을 반드시 Local Agent로 임명하여 ASIC에 회사 변경사항(주주, 이사 등) 신고 및 제출의 의무를 호주 현지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인이 아닌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한국 서류의 영문 번역 및 공증 그리고 서류검토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시간이 더 소요되며, 비용도 법인(Pty Ltd) 설립의 경우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

## 연락사무소

호주 내 상법상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등록 규정이 없으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영업 활동을 도우며 그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들만 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가가치세(GST)신고 및 직원 급여의 원천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다.

## 나. 회사 유형

### 주식회사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공개 법인으로 주식의 공모가 원칙이며 발행된 주식은 증권 거래소에 등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호주 거주자 2명 포함 적어도 3명의 임원 및 1명의 호주 거주인 자격이 있는 총무를 두어야 한다. 무한책임회사와 보증책임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회사명에 항상 'Limited' 혹은 'Ltd'라는 명칭을 포함해야 하고 재무제표의 공개의무, 감사 등 비공개 회사보다 많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 유한책임회사

우리나라 상법상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비공개 법인으로 주식, 사채 및 기타 증권의 공모가 금지된다. 이 경우 직원이 아닌 주주가 50명을 넘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 1명의 총 책임자 등록 및 1명의 호주 거주인 자격이 있는 임원을 두어야 한다. 회사명에 항상 'Proprietary' 혹은 'Pty'를 붙여야 하고 현금 또는 기타의 대가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사모 방식의 주식 및 담보 부기채 발행이 가능하다. 재무제표는 세무 신고서를 제외하고는 공표의 의무는 없다. 매해 비공개회사는 '소규모' 혹은 '대형' 비공개회사로 구분되는데 아래의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시킬 때만 '소규모'로 분류된다.

- 회계연도 회사 소득이 A\$ 5,000만 이하
- 회계연도 회사 자산이 A\$ 2,000만 이하
- 회계연도 회사 직원 수가 50명 이하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즉, Sole trader는 개인이 사업체가 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형태이다. 개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Australian Taxation Office(호주국세청, 이하 "ATO")에서 Australian Business Number(사업자등록번호, 이하 "ABN")를 부여받아야 한다. 사업 소득은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되며, 사업주는 근로소득 등 여타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사업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로 사업 운영 시 장점은 사업 설립비용과 관리,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사업손실 발생 시 사업 손실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상계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 전환 시 사업 이전에서 오는 양도소득이 법인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계산 시 50%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더하여 사업 관련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에 대해 Small business concession(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이하 "SBC") 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사업자로 사업 운영 시 단점은 사업상 발생하는 법적 책임, 부채 및 사업손실이 사업주 개인에게 전가되며,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45%(2017년 기준)의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사업손실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공제 시, Non-commercial

Loss Test(비소득 손실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o Calibre Business Advisory

전화번호	+61-2)9261-2177
주소	Level 15/309 Kent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a href="http://calibreba.com.au">http://calibreba.com.au</a>
이메일	<a href="mailto:jamie.lee@calibreba.com.au">jamie.lee@calibreba.com.au</a>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이준목 회계사(Lee, Jun Mok), 김용진 회계사(Kim, Yong Jin))

### o Private Advisory Group

전화번호	+61-2)8386-8733
주소	1/35 West Parade Eastwood NSW 2112
홈페이지	<a href="http://www.privateca.com">http://www.privateca.com</a>
이메일	<a href="mailto:eric.kang@privateca.com">eric.kang@privateca.com</a>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강민우 회계사(Kang, Min Woo))

### o Charm Accounting Pty Ltd

전화번호	+61-2)8206-0923
주소	Suite 104, 379 Pitt Stree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a href="http://charmacc.com/ko/">http://charmacc.com/ko/</a>
이메일	<a href="mailto:steve@charmacc.com">steve@charmacc.com</a>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임호택 회계사(Lim, Hyo Taek), 이은 회계사(Lee, Eun))

### o H and H Lawyers

전화번호	+61-2)9233-1411
주소	Level 5, 32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hhlaw.com.au">http://www.hhlaw.com.au</a>
이메일	<a href="mailto:ken.hong@hhlaw.com.au">ken.hong@hhlaw.com.au</a>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홍경일(Hong, Kyung Il), 김현태 변호사(Kim, Hyun Tae))
비고	노동법 등 전문 법무법인

◦ The Hills Legal House

전화번호	+61-414-070-657
주소	U277, 398 Pitt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a href="http://thehillslegal.com.au">http://thehillslegal.com.au</a>
이메일	law@seongminlee.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이성민 변호사(Lee, Seong Min))

◦ Moore Stephens

전화번호	+61-2)8377-9000
주소	Level 7, 9 Castlereagh st Sydney NSW2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moorestephens.com.au">http://www.moorestephens.com.au</a>
이메일	jyu@Moorestephens.com.au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유형석 변호사(Yu, Hyung Suk))

◦ Wentworth Lawyers and Partners

전화번호	+61-1300-577-502
주소	L13, 2 Park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wwlp.com.au">http://www.wwlp.com.au</a>
이메일	johnpark@wwlp.com.au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박정호 변호사(Park, Jeong Ho), 이소정 변호사(Lee, So Jeong))

◦ EY(Ernest and Young)

전화번호	+61-2)9276-9815
주소	200 george st sydney NSW 2000
이메일	simon.yoo@au.e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유훈 전무, 아시아총괄 회계사(Simon Yoo))
비고	4대 메이저 회계 및 컨설팅사

○ Holing Redlich

전화번호	+61-428-505-264
주소	Level 65 MLC Center, 19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이메일	dr.christineoh@gmai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크리스틴 오, 한국기업 전문 변호사(Christine Oh))
비고	시드니 10대 종합 법무법인

<자료원 : 회계 및 법무법인별 홈페이지, KOTRA 시드니 무역관 보유 자료>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5. 청산 및 철수

### 관련 법 및 절차

#### 1) 청산

##### ○ 청산 종류

- 임의 청산: 채무자의 요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참가한 투표를 통해 청산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 법정청산/강제청산: 주로 채권자나 주주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청산절차이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서 공식적 청산을 명령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청산자는 법원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 ○ 청산 절차

- 투표 혹은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며 임명된 청산자는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여 채권자의 의견 및 상황을 파악하며 청산자의 비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된다. 청산 비용은 회사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4,000~8,000호주달러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며, 청산 시 지급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 청산절차에 드는 비용 및 청산자의 급여
- 미지급 급여 및 연금 계산
-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연차 급여 계산
- 근로자 해고에 따른 비용
- 무담보 채권

- 청산자는 항목에 따라 자산을 처분 혹은 사업 운영수익을 배분해야 하며 영업종결,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가 마무리되면 결산보고를 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으면 청산이 종결된다. 한편, 통상 청산 기간은 7주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 2) 철수

##### ○ 투자법인 철수 신청

- 투자법인의 철수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회사 구성원의 결정에 의해서
-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 회사의 자산이 A\$1,000미만일 경우
- 회사가 아래와 같은 항목의 채무가 없을 경우
- 연차휴가
- 장기 근속휴가
- 기타 수당
- 퇴직금
- 급여
- 회사가 어느 소송에도 연루되지 않았을 때
- Corporations ACT 2001 에 따른 비용 및 벌금 등을 모두 납부하였을 경우

##### ○ 투자법인 철수 절차

- 투자법인 철수 절차는 철수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경우 Application for voluntary deregistration of a company (FORM6010)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PO Box 4000 / Gippsland Mail Centre VIC 3841

##### ○ 투자법인 철수 비용

- 2018년 7월 기준 A\$ 40A\$40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6. 노무

###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1.37호주달러(2018년 12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40,00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5,00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8.93
-------------------------	--------	-------------------------	--------	-------------------	-------

<자료원 : Graduate Careers Australia, Indeed, 호주옴부즈만>

### 나. 노무관리

#### 고용계약

고용 계약은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구도 또는 서면을 통하여 양측 합의하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계약 형태는 풀타임(Full-time : 지속적 고용 계약. 평균적으로 약 38시간/주 근무), 파트타임(Part-time : 매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 근무. 38시간 미만 근무. Full-time 고용인과 동일한 혜택(단, 시간 비례 적용)), 캐주얼(불규칙적 근무시간, 근무 보장 시간 없음. 휴가 미적용. 계약서상 명시된 조항 없을시 자유롭게 계약 파기 가능)로 구분될 수 있다. 호주 국가고용기준(NES :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따라 계약서에는 공정근로법에 규정된 10개 항목의 최소 고용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일주일 최대 근무 시간
- 자유 근무시간 협정 요구
- 출산 휴직 및 육아 관련 권리
- 연차 휴가
- 개인 휴가(병가 및 보호자 휴가) & 사별 휴가
- 지역사회 봉사휴가
- 장기근속휴가
- 공휴일
- 해고 공지 및 퇴사 급여
- 공정 근로 선언문 조항(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 근로시간

호주 노동법상 근로자의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은 주 38시간으로 근로자가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일을 하거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의한 시간 이외에 근무한 시간은 추가근무(Overtime)로 간주된다. 추가근무 수당은 산업별, 직종별로 상이하며, 평일 근무시간 이후 첫 2시간, 첫 2시간 이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직종별 추가근무 수당 상세 정보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fairwork.gov.au/pay/minimum-wages/pay-guides>)

#### 휴가

연 4주(근무일 기준 20일)의 연차 휴가, 병가(Sick leave, 연 10일),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13주의 장기 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등이 있다. 주에 따라서 경조사 휴가(Bereavement Leave) 등을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기도 하다. 연례 휴가비(Annual leave loading)는 통상 임금의 17.5%를 휴가 전에 지급해야 한다. 1994.3.31부터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남자에게도 자녀 출산 시 52주의 무급 휴가를 (원할 경우) 출 수 있게 돼 있다. 12개월 이상의 연속 근무를 마친 모든 고용인은 출산/육아휴직(Maternity or Adoption leave)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고용인이 자녀를 출산했거나 고용인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그리고 고용인이 16세 이하

의 아이를 입양했을 경우 NSW주 기준 14주의 유급휴가 및 최대 24개월의 무급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다.

## 해고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전 통보를 해주어야 하며 해고 통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해고통보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효력을 갖게 됨
- 해고통보는 근로자의 근무 종료일에 효력을 잃음

근로자가 위법 행위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고용주는 근로시간 또는 연차 등에 해당하는 모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위법 행위란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포함한다.

- 타인 건강 및 안전 또는 고용주의 사업의 평판과 이익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경우
-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행위를 고의적으로 할 경우
- 도둑질, 사기, 폭력, 업무에 관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지시에 대한 불이행 등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아래와 같은 최소 통보 기간을 주어야 한다.

- 근속연수 1년 미만 : 1주
- 근속연수 1-3년 : 2주
- 근속연수 3-5년 : 3주
- 근속연수 5년 초과 : 4주

한편, 근로자의 나이가 45세 이상임과 동시에 고용주와 함께 근무한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일 경우, 평균 해고 통보 기간에 추가로 일주일 을 가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퇴직금

퇴직금이란 근로자의 근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불해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퇴직금은 산업별 단체 협약, 기업 협 정이나 어떠한 등기 협정서에 상이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근무 종료일 또는 다음 월급 예정일에 지급되어야 한다.

- 퇴직금 지급 : 근로자의 퇴직금에는 추가근무수당 및 공제액을 포함하여 미지불된 근무 시간 수당, 축적된 연차(연차수당, 할당된 장 기근속휴가 수당, 퇴직 수당)가 포함되어야 함
- 정리해고 수당 및 재정 지원 혜택 : 근로자가 정리해고를 당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리해고 수당을 지급. 정리해고 수당은 소 기업 및 캐주얼 고용인 등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

## 다. 사회보장제

### 건강보험

호주 공공 건강보험 제도인 매디케어(Medicare)는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건강보험위원회가 그 비용의 85%를 상환하도록 하거나 의사가 직접 벌크-빌링(bulk-billing: 정부가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의 차액을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병원에서 환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매디케어는 매년 회계연도에 이루어지는 텍스리턴 시 매디케어 레비라는 항목으로 개인의 연 수입의 1.5%를 정부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 고용보험

호주는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은 고용보험 아닌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조세제도를 통해서 운영되는 사회보장급여에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의 사회보험제도는 호주연방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회복지 급부제도로 호주정부기구인 센터링크(Centrelink)에 의해 관리된다.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크게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12개월 미만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수당(Job Search Allowance; JSA)과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뉴스타트 수당(NEUWSTART Allowance; NSA)이다. 첫 12개월 실직기간 동안에 구직수당 수령자에게는 구직지원이 제공된다. 그러나 12개월 이후에는 구직수당에서 뉴스타트 수당 수령자로 자동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실업자가 뉴스타트 수당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고용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

산재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근무현장에서 부상을 당했거나 업무로 인해 병에 걸렸을 경우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무지에서의 부상이나 업무로 인한 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수당과 의료비용 및 재활비용을 커버한다. 호주의 경우 산재는 해당 주(지역)법을 준수하고 있다.

## 국민연금

고용주는 한 달에 450호주달러(세금 전) 이상의 임금을 받는 18세 이상 또는 18세 이하지만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금(월급의 9.5%)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연금 보장이라 하며 모든 정규직(Full-time, Part-time)과 일부 캐주얼 근로자에 적용된다. 연금은 고용인의 지정연금 계좌에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지불되어야 한다. 호주는 연금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고령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은퇴를 앞둔 퇴직자들은 적어도 100,000호주달러 많게는 500,000호주달러 이상 적립한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연금에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정보(투자-노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7. 세금

### 가. 조세제도

#### 법인세

호주의 법인세율은 회계연도 2018-19년 개정된 호주 예산안에 의해 기업 규모에 따라 1~1.5%의 법인세 인하를 받게 되며 2026-27년까지 지속 인하하여 25%의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8년 7월 1일부터는 일반 기업의 법인세율은 30%이며 소규모기업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소기업은 연 매출 5천만 호주달러 미만의 기업으로 기존 2017-18년 기준인 2천5백만 호주달러 대비 2배나 증가하였다. 표준 법인세율을 비교할 때 OECD 국가 중에서 호주는 높은 편으로, 재계에서는 끊임없이 법인세율 인하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개편을 통해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순차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것을 발표했다.

#### 개인소득세

호주는 개인소득세율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호주의 주요 세수원이다.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 2018-19에 따라, 기존 연 소득 37,001-87,000 호주달러에 부과되고 있는 과세 구간이 올해 7월 1일부터는 연 소득 37,001-90,000 호주달러까지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8년 6월까지의 연 소득 0-18,200 호주달러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18,201-37,000 호주달러 구간에는 19%의 소득세가, 37,001-87,000 호주달러 구간에는 32.5%, 87,001-180,000 호주달러 구간에는 37%, 180,001 호주달러 이상 구간에는 45%의 소득세가 부과)

최근 발표한 연방정부 방침 대로 3번째 과세구간의 최대 소득액을 87,000 호주달러에서 90,000 호주달러로 조정할 경우, 20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이 기존 37%에서 변경된 32.5% 과세만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연방정부는 향후 소득세 두 번째 과세 구간인 18,201-37,000 호주달러 역시 상향 조정할 예정으로, 현재 19%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구간의 최대 소득액을 2023년까지 41,000 호주달러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3년까지 고소득자의 세금 인하 혜택도 늘릴 계획으로, 연간 소득 120,000 호주달러까지 소득세 32.5%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32.5% 세율로 세금을 내는 호주인이 94%에 이르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 부가가치세

호주의 부가가치세 GST(Goods and Services Tax)는 일부 기초 생필품을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 등 모든 소비 활동에 적용되는 세제로 10%의 단일 세율이며, GST세제 도입으로 연방정부 관할 간접세인 도매 판매세(Wholesale sales tax)와 주 정부에서 부과하는 FID, Debit tax, 인지세(Stamp Duty) 등 간접세는 폐지되었다. GST는 영세율 대상(GST FREE)과 면세 대상(Input Taxed)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소비 행위에 부과된다. 그러나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하는 사업자(Enterprise)는 GST를 환급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GST의 부담이 없다.

#### 특별소비세

호주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유류 및 주류, 담배, 럭셔리 자동차에 등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특별 소비세는 종량세 방식인 상품의 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가정보(투자-세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8. 외환

### 가. 외환제도

#### 외환 제도 개요

##### 1) 연방준비 은행법

호주의 외환관리기구는 중앙은행인 준비은행(The Reserve Bank of Australia)으로 중앙은행이 통화 발행 및 금융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외환 정책도 수립, 집행하고 있다. 1959년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외환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경제 성장 및 금융 시스템의 발달로 금융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면서 1959년 연방준비은행법(The Reserve Bank Act 1959)을 제정하여 준비은행이 외환도 관리하게 됐다.

호주는 1983년 12월부터 외환 관리를 종전 통제 위주에서 점차 완화하여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신용장 개설, 해외 투자 및 송금 등 전 분야에 걸쳐 외환 관리를 대폭 자유화했으며, 현재는 외국 정부 및 외국 기관과 외국 은행의 대외 투자와 호주 통화의 해외 반출 및 세무 목적 이외에는 외환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 세무 목적상 보고해야 할 외환 현금 거래 대상
- 관련 법규: Financial Transaction Report Act 1988
- 보고 기관: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 and Analysis Centre (AUSTRAC)
- 보고 대상: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선물 거래 업체 및 귀금속 취급 업체가 A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 및 5,000 호주달러 이상의 외환을 송금하거나 및 수취할 때

##### 2) 환율 제도

국제 수지 방어를 위해 1983년까지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 정부가 환율 결정 및 외환 수급 조절 등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했으나, 1983년 12월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환율이 시장 수급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되고 있는데, 호주 중앙은행이 1992년부터 지난 20년간 환율 시장에 개입한 사례는 총 13회에 그치고 있다.

당일 기준 환율, 기준 금리 및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정보는 호주 중앙은행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www.rba.gov.au](http://www.rba.gov.au))

#### 외환 규제

##### 1) 무역 대금 결제

L/C 방식의 대금 결제가 일반화돼 있으나 대형 수입상은 D/A 또는 D/P, 소형 수입상은 T/T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품 인도 후 입금도 매우 흔하다. 특히 호주 은행이 L/C 발행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담보액이 크고, 절차 지연 등으로 불측의 지급 지연상태가 있는 경우 등도 있어 L/C 개설을 꺼리는 바이어가 많다.

일반적인 송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5,000호주달러 미만인 경우는 30호주달러, 5,000~50,000호주달러의 경우는 50호주달러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최근에는 인터넷뱅킹으로 해외 송금을 바로 할 수 있게 돼 편리해졌으며 수수료 부담도 낮아졌다. 은행에서도 가급적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2) 현지 법인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의 경우 해외 피 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난 후의 금액을 본사로 송금하는 것으로서 세후 소득

이다. 이는 외국 피투자회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간접 납부한 세금으로 볼 수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100% 공제 가능하고, 조세조약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50% 공제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주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조세 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특법에 따라 50%만 공제가 된다.

### 3) 자금 조달

호주의 금융산업은 선진화돼 있으며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어 자금조달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다만 투명하게 관리되는 만큼 부정대출이나 대출서류 조작 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출 기관은 시중 4대 주요 은행 외에도 다수의 은행기관과 연금펀드 관리기관,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사가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중개 브로커들의 활동도 활발하기 때문에 적절한 자금 조달은 원활하다.

호주의 시중금리는 연방준비은행이 지정하는 기본금리에 각 은행별로 마진을 붙여 대출 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호주의 통화는 원자재 가격에 연동돼 있어 변동성이 상당히 큰 편이며 변동성을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 타 선진국 대비 이자율이 높은 편이다. 다만 최근 들어 국제적인 추세인 저금리에 호주는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역대 최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 금리는 15~29% 정도로 다양하나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기준금리에서 약 3%의 마진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정보(투자-외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IV. 참고정보

### 1. 시장특성

####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 소비인구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호주의 인구는 약 2,513만 명으로 2018년 1분기 기준, 전년 대비 1.6%의 인구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 구성은 20~30대가 전체 인구의 33% 차지, 40~50대가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이 17%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 보완 및 투자의회에 따르면, 이 중 월별 소비가 가장 높은 그룹은 30~40대 부부로 5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WTO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호주 1인당 GDP(구매력 기준)는 US \$48,460으로 세계 21위에 해당한다. <자료원 : 호주통계청, WTO>

##### 소비 성향

2018년 3월 호주 보안 및 투자의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호주 가정이 실생활에 소비한 비용은 약 6,660억 호주달러로 가정당 연평균 7억4,300만 호주달러를 소비했다. 이 중 여가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총 800억 호주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 자동차, 의료, 패션, 교육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역별 가정당 일주일 평균 소비액을 보면 노던 테리토리(NT)주가 1,700호주달러로 가장 높다. 대사관이 밀집한 호주 수도(ACT)주가 1,670호주달러, 시드니가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즈(NSW)주가 1,525호주달러, 빅토리아(VIC)주가 1,430호주달러이며, 광산업이 발달한 서호주(WA)주가 1,429호주달러를 차지했다.

##### 한국 상품 이미지

호주에서의 한국상품 인지도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화장품 등 중심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호주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White goods)의 경우, 삼성과 LG가 각각 전체 유통시장의 12%와 6%를 차지하며 전체 3, 4위를 다투고 있으며, TV, 세탁기 등 품목에 따라서는 1, 2위를 차지한 경우도 있다. 특히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애플사에 이어 호주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는 중국 제품이 잇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호주에서의 월별 한국차 판매량은 현대차가 지속 1~3위권을 차지하며 긍정적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기아차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호주 내 중국계 인구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유력 화장품 편집숍에 한국제품이 인기리에 판매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함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시장특성)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2. 비즈니스 에티켓

### 가. 상거래 유의사항

#### 상거래 시 유의사항

##### 1) 소량 수입 주문

시장의 규모가 작다 보니 미국이나 EU와 비교할 때 1회 주문량 자체가 소량일 경우가 많다. 심지어 TARGET, K-MART 및 BIG W, WOOLWORTHS와 같은 호주 대형 유통 체인점들의 주문량도 해외 공급업자들이 납품할 수 있는 최소 주문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호주는 전체 인구가 2,513만 명(2018년 11월 기준) 정도로 국토 대비 인구가 적은 국가로서 시장 규모도 미국과 비교해볼 때 대략 10분의 1 정도로 보면 된다.

시장규모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한 업체는 호주 최대 소매 유통 체인 중 하나인 Target사와 계약을 맺고 주문을 진행하였으나 미국 대비 주문량이 너무 적다고 실제로 실망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호주는 미국이나 유로존 국가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나 그만큼 보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성공적으로 공급을 시작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면 쉽사리 공급선을 변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뉴질랜드와 남태평양 등지로 시장을 확대하기도 용이하여 소량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 2) 최초 주문

호주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초도 주문량에 대해 조금은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호주업체들은 최초 주문 시 컨테이너 규모로 주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보통 샘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물량을 늘려가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공급선이 다양한 품목의 경우는 더욱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꾸준히 거래하면서 신뢰를 쌓고 품질을 인정받는다면 주문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으니 이 점에 대해 미리 이해를 해두는 것이 좋다.

##### 3) 미국 또는 호주 달러화로 FOB, CIF 기준의 견적 요구

수출을 하고자 하는 한국 업체들이라면 기본적으로 US\$ 통화를 기준으로 FOB 조건의 가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호주 업체들이 US\$ 통화를 수용하는 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환위험 관리 및 계산상의 편리 때문에 자국 통화인 A\$를 기준으로 FOB보다는 보험 및 운송료가 포함된 가격인 CIF 가격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과 거래 경험이 없는 호주 업체들의 경우는 운송 및 보험에 관한 정보가 어두운 경우가 많으므로 FOB 가격과 함께 CIF 가격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대금 결제 방식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안전한 L/C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대금 결제 방식도 L/C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D/A, D/P 조건 등 다양한 결제 조건을 수용하는 융통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호주의 많은 기업들은 조금 규모가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L/C 개설 상의 절차상의 복잡성 및 자격 요건,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직송금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 또한 호주의 기업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므로 호주 기업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유연성 및 이해가 필요하다.

##### 5) 선적 일자

호주 기업에 물어보면 한국 기업과 거래하기 제일 좋은 점 중의 하나가 빠르고 정확한 납기이다. 한국 업체들을 보면 납기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어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예상 기일보다 많게는 한 달 먼저 생산해서 선적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선적을 위해서는 바이어와 항상 의논을 먼저 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바이어의 경우 수요를 감안해서 Stock 관리 및 주문을 하게 되며, 만약 1개월 정도 먼저 제품을 공급받는다면 1컨테이너당 많게는 1억이 넘는 돈이 바이어 입장에서는 묶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호주 바이어는 빠른 선적보다는 기일을 맞추는 정확한 선적을 요구한다.

## 6) 관공서 관행

호주에서는 사회 관행이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사회 정의가 확립되어 있고 모든 일에 원리원칙이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서는 뇌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세관의 수입 물품 통과 절차도 신뢰를 바탕으로 문서 심사 위주로 진행되나, 샘플링 검사에서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신뢰를 쌓기까지 이후 5~6회 동안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호주 관공서의 일처리 태도는 매우 친절하나 결코 서두르지 않으므로, 한국처럼 일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관공서에서 특정 업무 담당자가 휴가(통상 1개월)를 떠나거나 장기 출장을 떠났을 경우, 그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달리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돌아올 때까지는 그 업무가 마비되나, 호주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비단 관공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2월 중반부터 약 한 달간은 현지 휴가 기간으로 종종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나. 상담 유의사항

###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 1) 회식

호주는 개인주의 사회이다. 비즈니스에서도 이러한 개인주의 원칙은 철저히 지켜진다. 모든 업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적인 근무 시간에 이뤄지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후 5시가 되면 어김없이 퇴근한다. 누구도 타인의 자유시간을 침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끝난 후 밖에서 회식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직장 또는 사무실 근처 펍(Pub)에서 간단하게 맥주나 와인을 한 잔씩 들고 담소하는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회식시간을 당겨서 금요일 오후 2~3시 정도가 되면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맥주를 동료들과 마시거나 근처 펍에서 마시고 퇴근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근무 시간이 끝난 후 술집에서 거래처를 따로 접대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일도 거의 없다. 이렇듯 호주 사람들은 타인의 개인 생활을 존중하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인 생활을 보호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와 의무로 생각한다.

회식에서도 우리와는 달리 호주는 개인적인 질문을 일체 하지 않으며 수년간 같이 근무한 직장동료 간에도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결혼을 했는지 등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면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초면에 개인신상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실례가 될 수 있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약속

면담이나 협상은 반드시 사전 약속(최소 2주 이상)을 통해 하되 주중 저녁 시간, 금요일 오후, 주말(토, 일요일)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적인 업무 처리는 근무 시간 중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호주 사람들은 무척 가정적이다. 그래서 퇴근하면 대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금요일 밤을 제외하고 오후 8시 정도가 되면 지하철과 도로는 한산하다. 이미 퇴근 시간대의 러시아워가 지난 후이기 때문이다.

#### 3) 선물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선물은 마음의 표현 이상 및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식 관습으로 고가의 선물이나 유가증권(상품권 및 현금 등)을 주고받는 경우는 없다.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백화점 상품권이나 고가의 양주 및 고급 만년필 등의 선물은 받는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향후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도 받을 수 있어 피하는 게 좋다. 그러나 가벼운 선물 등은 쉽게 주고받는 경우가 많으며 실용적인 품목들이 인기가 많다. 물론 매번 만남 때마다 선물을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보통 준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국가정보(참고정보-비즈니스 에티켓)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 가. 성공사례

##### 1) S사, 한-호 FTA 체결로 가격 경쟁력 확보, 지사화 사업 통한 수출 증진 성공

S사는 연질캡슐 성형 및 포장설비 제공 업체로 한-호 FTA 체결 전인 2014년까지는 높은 관세로 인한 낮은 가격 경쟁력으로 호주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한-호 FTA 체결로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상승하면서 현지(호주) 업체들의 문의가 늘어났으며, S사는 본격적 시장 확장을 위해 호주 내 법인 설립을 계획하였다. 당사는 보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가입하였으며, 시드니 무역관과의 협업을 통해 S사는 2016년 11월 성공적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현재 꾸준한 신규 바이어 발굴을 통해 거래선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20여 개의 호주 주요 제약회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對호주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 2) 높은 진입장벽을 뚫고 호주시장 진출한 N사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N사의 빅토리아주 멜버른 공장은 호주 식품의약청에 해당하는 TGA로부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현재 호주 1, 2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Blackmores 사와 Swisse 사의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N사의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장 투자는 의료기술, 생명공학, 제약개발 및 생산으로 유명한 멜버른 지역에서도 주목할 만한 대형 투자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현지 진출 성공사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4. 출입국 안내

### 가. 비자

#### 종류 및 발급절차

관광, 상용 비자는 호주대사관을 통해 발급받거나, 20호주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ETA를 인터넷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해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없다. ETA를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인터넷 서비스비로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여행사나 항공사를 통하여 신청할 경우 대개 12시간 이내에 비자 취득이 가능하지만, 소수의 신청자는 간혹 승인되기 전에 추가 확인을 위해 호주 대사관으로 문의하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최소 5일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에는 여행 목적에 맞는 다른 적합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ETA 비자는 유효한 여권 소지, 방문목적이 여행, 친지 방문 또는 회의나 컨퍼런스 참석일 경우, 호주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을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 ETA 시스템 회원사인 항공사로 여행할 경우 취득이 가능하다. 3개월 이상 체류 시 단기방문/상용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주한 호주대사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관련 정보 [www.australia.or.kr](http://www.australia.or.kr)를 참조)

### 나. 휴대품 통관

#### 휴대품 면세

##### 1) 외화 반·출입 한도

호주 입국 시 10,000호주달러 이상(또는 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환)을 휴대 시 별도 양식(AUSTRAC Cross Border Movement - Physical Currency)으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찰 외에 환어음, 여행자 수표, 개인 수표, 약속어음, 무기명 채권, 우편환, 송금수표, 무기명 주식 등은 호주 정부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2) 휴대품 면세한도

Customs, Quarantine and Wildlife Statement에 명시된 신고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검사대를 통과(통과 시 동 Statement 제출)한다. 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일반적으로 150~300호주달러 상당)을 내야 한다. 호주 입국 시 일부 방문객의 경우 입국 심사 시간을 절약하거나 세금 등의 우려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부분 적발되어 벌금을 내고 입국 심사도 훨씬 길어지는 등 불이익이 크므로 반드시 통관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만을 위한 세관 검사대에서 휴대품을 검사 받는다. 신고된 식품 등이 친지 선물용 정도로 판단될 경우, 세관 검사는 간략한 검사로 통과된다.

- 허용되는 면세 물품 범위(18세 이상의 성인만 적용)
  - 900호주달러까지의 면세품은 허용되나 담배나 주류제품은 제외(18세 미만인 사람에게서는 450호주달러까지만 허용)
  - 2.25리터의 주류제품 허용
  - 담배 25개피 또는 여연송(cigars) 25그램 초과 반입 불가
  - 김, 고추장 등 식품의 경우, 밀폐 포장되고 내용 성분 표기가 명확한 제품만 휴대 반입이 허용되며, 집에서 담근 고추장, 김치 등 식품은 모두 압류 조치됨

특히, 담배의 경우 호주와 한국 간의 담배가격이 5~8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몰래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호주 당국 관계자들로부터 엄격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 경우 모든 소지품을 꼼꼼히 검사하게 되며 입국 심사 시간도 2배 가량 더 걸리기 때문에 25개피 이상 담배는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골프화나 운동화를 지참할 경우에도 입국신고서에 휴대하고 있음을 표기하여야 하

며, 신발 바닥에 흙이 묻어있을 시 세관이 소독작업을 거친 후 통관을 허용하기 때문에 통관 수속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5. 유관기관

###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 주호주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61-2-6270 4100
주소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홈페이지	<a href="http://aus-act.mofat.go.kr/">http://aus-act.mofat.go.kr/</a>
비고	이백순 대사, 이규봉 상무관

#### ○ 시드니총영사관

전화번호	+61-2-9210 0200
주소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a href="http://aus-sydney.mofat.go.kr">http://aus-sydney.mofat.go.kr</a>
비고	윤상수 총영사

#### ○ 주멜번대한민국분관

전화번호	+61-3-9533 3800
주소	Level 10, 636 St Kilda Rd, Melbourne VIC 3004
홈페이지	<a href="http://mel.mofa.go.kr">http://mel.mofa.go.kr</a>

#### ○ 한국관광공사

전화번호	+61-2-9252 4147
주소	18/264 George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a href="http://visitkorea.org.au">http://visitkorea.org.au</a>
비고	김태환 지사장

#### ○ 한국광물자원공사

전화번호	+61-2-9959 5444
주소	Suite 1101/50 Berry Street, North Sydney NSW 2060
홈페이지	<a href="http://www.kores.or.kr">http://www.kores.or.kr</a>

○ 시드니한국문화원

전화번호	+61-2-8267 3400
주소	Ground floor, 255 Elizabeth Stree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koreanculture.org.au">http://www.koreanculture.org.au</a>
비고	김소정 원장

○ 호주시드니한인회

전화번호	+61-2-9798 8800
주소	82 Brighton Ave, Croydon Park NSW 2133
홈페이지	<a href="http://www.koreanet.org.au">http://www.koreanet.org.au</a>
비고	류병수 회장

○ 호주퀸즐랜드주한인회

전화번호	+61-424 724 624
주소	1406 Beenleigh Road Kuraby QLD 4112
홈페이지	<a href="http://www.ksqld.org">http://www.ksqld.org</a>

○ 호주골드코스트한인회

전화번호	+61-411 378 391
주소	PO BOX 7968 Bundall QLD 4217
홈페이지	<a href="http://www.qldkorean.com">http://www.qldkorean.com</a>

<자료원 : 기관별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호주무역투자진흥공사(AUSTRADE)

전화번호	+61-2 9392 2000
주소	Level 23, Aon Tower 201 Kent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austrade.gov.au">http://www.austrade.gov.au</a>

◦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전화번호	+61-2 6261 1111
주소	R.G. Casey Building, John McEwen Crescent Barton ACT 0221
홈페이지	<a href="http://www.dfat.gov.au">http://www.dfat.gov.au</a>

◦ 호주관세청(Australian Customs)

전화번호	+61-131 881
주소	10 Cooks River Drive Mascot NSW 2020
홈페이지	<a href="http://www.homeaffairs.gov.au">http://www.homeaffairs.gov.au</a>

◦ 호주검역청(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전화번호	+61-2 6272 3933
주소	18 Marcus Clarke St, Canberra ACT 2601
홈페이지	<a href="http://www.agriculture.gov.au">http://www.agriculture.gov.au</a>

◦ 호주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전화번호	+61-13 72 26
주소	Woden Service Centre, Penrhyn House, 6 Bowes St Woden ACT 2606
홈페이지	<a href="http://www.ato.gov.au">http://www.ato.gov.au</a>

◦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전화번호	+61-2 9268 4909
주소	ABS House 45 Benjamin Way, Belconnen ACT 2617
홈페이지	<a href="http://www.abs.gov.au">http://www.abs.gov.au</a>

◦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전화번호	+61-1300 300 630
주소	100 Market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asic.gov.au">http://www.asic.gov.au</a>

◦ 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전화번호	+61-1300 300 630
주소	20 Bridge Stree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asic.gov.au">http://www.asic.gov.au</a>

○ 호주국가표준 감독(Standards Australia)

전화번호	+61-2 9237 6171
주소	10 The Exchange Centre, 20 Bridge Stree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standards.org.au">http://www.standards.org.au</a>

○ 호주지재권감독정부기관(IP Australia)

전화번호	+61-2 6283 2999
주소	Ground Floor, Discovery House, 47 Bowes Street Phillip ACT 2606
홈페이지	<a href="http://www.ipaustralia.gov.au">http://www.ipaustralia.gov.au</a>

○ 해외투자승인기관(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전화번호	+61-2 6216 1111
주소	The Treasury Langton Crescent Parkes ACT 2600
홈페이지	<a href="http://www.firb.gov.au">http://www.firb.gov.au</a>

○ 녹색산업대표단체(Clean Energy Council)

전화번호	+61-3 9929 4100
주소	Level 15, 222 Exhibition Street, Melbourne VIC 3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cleanenergycouncil.org.au">http://www.cleanenergycouncil.org.au</a>

○ 호주에너지공급기업대표단체(Australia Energy Supply)

전화번호	+61-3 9103 0400
주소	Level 14, 50 Market Street Melbourne 3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energycouncil.com.au">http://www.energycouncil.com.au</a>

○ 호주공영방송기관(Special Broadcasting Service)

전화번호	+61-1800 500 727
------	------------------

주소	14 Herbert Street, Artarmon NSW 2064
홈페이지	<a href="http://www.sbs.com.au">http://www.sbs.com.au</a>

○ 나인 네트워크 방송(Nine Network)

전화번호	+61-2 9906 9999
주소	Australia Square, 264 George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nine.com.au">http://www.nine.com.au</a>

○ 디 오스트레일리안 신문(The Australian)

전화번호	+61-1300 696 397
주소	2 Holt Street, Surry Hills NSW 2010
홈페이지	<a href="http://www.theaustralian.com.au">http://www.theaustralian.com.au</a>

○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Sydney Morning Herald)

전화번호	+61-2 9282 2833
주소	1 Darling Island Rd, Pyrmont NSW 2009
홈페이지	<a href="http://www.smh.com.au">http://www.smh.com.au</a>

<자료원 : 기관별 홈페이지>



국가정보(참고정보-유관기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6. 물가정보

###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39 AUD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4.65
2	식품	비빔밥	1인분	13.2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2.4
4	식품	신라면	1봉지	1.3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3.5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1.1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2.1
8	의료	항생제	12정	9.5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1.6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2.6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2.5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25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4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17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3.9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24.8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10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	18.93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22217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1.5

<자료원 : 시드니무역관 자체 조사>



국가정보(참고정보-물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7. 출장정보

### 가. 환전

#### 통화체계

화폐 단위는 Australian Dollar(A\$)이며, A\$ 1 = 100 Cents이다. 원래는 파운드화를 사용했으나, 1966년부터 달러화 제도를 도입했다. 지폐의 종류는 A\$ 100, A\$ 50, A\$ 20, A\$ 10, A\$ 5(2종) 등 6종이며, 동전의 경우에는 A\$ 2, A\$ 1, 50 Cents, 20 Cents, 10 Cents, 5 Cents 등 6종이 있다.

호주준비은행은 호주 차세대 화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과 2017년 A\$5권과 A\$10권 지폐를 각각 발행하여 현재 구권과 신권이 함께 통용중에 있다. 2018년 10월에는 A\$50권 신권을 새로 발행하였으며, 2019년 A\$20권, 2020년 A\$100권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해나갈 계획이다.

#### 환전방법

호주에서도 환전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주거래 은행을 통해 환율 우대를 적용받거나 환율 우대 쿠폰을 사용해 환전하는 것이 좋다. 호주 공항, 시중 은행 및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환전소에 비해 유리한 환율이 적용되며, 공항이나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해야 할 경우 소액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전 금액이 클 경우 필히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이며, 환전 창구서에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이나 여권을 준비해야 한다.

#### 신용카드 이용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일부 소형 카페나 레스토랑, 상점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해야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곳도 있다. 또는 신용카드 사용 시 1% 내외의 수수료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마트, 백화점, 레스토랑에서는 신용카드를 받고 있으며, 현금카드인 Debit Card 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 나. 교통

#### 교통상황

호주의 버스, 전철 등의 대중 교통편이 잘 돼 있는 편이지만, 호주의 초행길인 출장자가 자칫 목적지에 정확히 내리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약속 시간을 놓치기 쉽다. 그래서 위의 대중교통은 권장할 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시드니 지리에 밝지 못한 출장자들에게는 장거리가 아닌 경우, 택시 이용이 권장된다. 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장거리인 경우에는 전철을 이용해 목적지 근처에서 하차한 후 다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시드니 기준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지하철(A\$3.54 / 1구간), 시내버스(A\$2.20), 택시(기본요금 A\$3.60)이다.

#### 버스

시내버스의 경우, 다양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10분에서 15분 간격 정도로 빈번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빈도수가 줄어들어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시드니 지역은 Night Ride가 버스 운행 마감 시간 이후 운행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전철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버스 요금은 현금으로 지불할 시 거리에 따라 차등이 있기 때문에 탑승할 때 행선지를 말하고 이에 합당하는 요금을 내야 한다. 간혹 장거리를 가면서 단거리 행선지를 말하는 부정승차 행위가 있으나 손님이 많은 경우에도 버스 기사가 상당히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어 하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정당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버스요금은 성인기준 0-3km 구간 A\$ 2.80(오파카드

사용시 A\$ 2.20), 3-8km 구간 A\$ 4.40(오파카드 사용시 A\$ 3.66), 8km 이상 A\$ 5.80(오파카드 사용시 A\$ 4.71) 이다. 일부 버스의 경우 현금을 받지 않고, 오파카드(호주의 교통카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 오파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시드니의 경우, 버스 정류장 안내 멘트나 표시가 따로 없어 본인이 내려야 하는 정거장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버스 기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택시

호주의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이 약 A\$3.60이나, 탑승과 동시에 시간, 거리 병산제가 적용된다. 1Km마다 A\$1.99가 부과되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A\$1.99의 20%가 더 부과된다. 그리고 도심 지역에서의 26km 미만으로 정체된 도로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1분당 85.8센트가 부과된다. 그 외에도 시내 산재해 있는 유료도로 공항 특별요금 등 각종 추가 요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호주에서 택시를 이용하면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도심 지역이나 모든 전철역에는 택시들이 많아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변두리 지역에서 택시를 잡아야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콜택시를 부르면 10분 안에 주변에 머물던 택시가 픽업을 하러 오나, 영어에 문제가 있거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호주의 공항에는 여행자 편의를 위해 시내 관광 안내책자를 공항 안 여러 곳에 비치돼 있으며,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는 도중 중간중간에 비치된 안내책자는 무료이기 때문에 한 권쯤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 책자는 주요 지역별 지도, 전철 노선도, 기타 가볼 만한 곳, 쿠폰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 트램

시드니에는 라이트 레일(Light Rail)이라고 불리는 트램이 있다(멜버른에서는 트램이라고 지칭함). 라이트 레일은 달링하버와 차이나타운을 경유하여 센트럴 스테이션과 덜치힐 구간을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구간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오전 6시에서 저녁 11시까지 운행되며,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6시에서 자정까지 운행된다. 요금은 기본요금 A\$2.80(오파카드 사용 시 A\$2.20)이며, 최대 A\$3.66(오파카드 사용 시 A\$4.40)까지 소요된다.

## 페리

시드니에는 페리라고 불리는 수상 교통수단이 있다. 총 8개의 노선이 있으며 시드니 시티 서큘러키 항을 기점으로 운행된다. 페리는 출퇴근 및 일반 교통수단의 역할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의 관광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페리 운행시간은 날씨, 구간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NSW Transport 홈페이지 또는 항구 전광판 등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기본요금은 A\$7.40(오파카드 사용 시 A\$6.01)으로 비싼 편이며, 최대 A\$9.20(오파카드 사용 시 A\$7.51)까지 소요된다. 일요일에는 이용구간에 상관없이 무제한 2.5호주달러에 대중교통과 페리선을 이용할 수 있다.

## 다. 통신

### 핸드폰

핸드폰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전화기기에 따른 주 통신사의 플랜(약정) 정보를 검토한 뒤 마음에 드는 통신사를 선택해야 한다. 주 통신사로는 텔스트라, 옴터스, 그리고 보다폰이 있는데 각 통신사별로 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다르다. 텔스트라의 경우 수신율이 제일 좋은 반면, 통화료가 비싼 편이고, 옴터스와 보다폰은 제공되는 혜택은 텔스트라보다 나을지 모르나 수신율은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매월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24개월 약정을 계약하면 이에 따른 핸드폰을 무료로 제공받거나 할부로 핸드폰을 구입할 수가 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핸드폰이 있다면 플랜(약정)이 없어도 개통할 수도 있다. 가입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여권 또는 체류증,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

기세 혹은 은행명세서), 은행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 인터넷(와이파이)

인터넷의 경우 텔스트라와 옵터스 외에 좀 더 저렴한 TPG가 있다. TPG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서비스가 텔스트라나 옵터스에 비해 조금 아쉽다. 그리고 텔스트라와 옵터스로부터 라인을 할당받은 중소 ISP 업체들이 대형통신사와의 경쟁하기 위해 보다 좋은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중소ISP는 TPG와 iiNet, Exetel 등이 있다. 기본 사양은 전화라인을 이용한 ADSL2+ 상품으로 월 60달러선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각 업체들은 통상 최소 1년에서 2년의 계약 기간을 요구하는데 선불(Prepaid) 방식의 무선인터넷(3G)를 이용하면 원하는 기간만큼만 사용하고 장비는 재판매가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업체는 Telstra, Optus, Vodafone, TPG, Virgin mobile, Unwired 등이다.

## 라. 관광명소

### ○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

도시명	시드니
주소	Bennelong Point, Sydney NSW 2000
운영시간	월~토: 오전 9시~오후 8시 30분 일: 오전 9시~오후 5시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1957년 1월 발표된 설계공모에서 덴마크의 건축가 John Utzon이 당선되어 1959.3~1973.9에 완공됐다. 매년 평균 약 3,000회의 행사와 200만 명 가량의 관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콘서트홀, 오페라 극장, 드라마극장, 연극관, 리셉션 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왕립 식물원(Royal Botanic Garden)

도시명	시드니
주소	Mrs Macquaries Rd, Sydney NSW 2000
운영시간	월~금: 오전 7시~오후 5시 30분 토, 일: 오전 7시~오후 5시 30분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시드니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온하고 녹색 분위기가 가득한 곳으로서 Harbour Bridge, Opera House와 시내를 관광할 수 있다. 1816년에 설립되었으며, 면적은 약 54헥타르이고, 시민, 관광객의 산책공원으로 애용된다.

### ○ 세인트 메리 대성당(St Marys Cathedral)

도시명	시드니
주소	2 St Marys Road, Sydney NSW 2000
운영시간	월~일: 오전 6시 30분~오후 6시 30분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1868년에 짓기 시작하여 2000년에 완공된 성당으로 하이드 파크 옆에 위치하고 있다. 호주 초기 영국에서 추방되어 온 죄수들의 숙소 근처에 지어졌으며 성모 마리아를 기리기 위하여 이름을 세인트 메리로 지었다. 중세고딕양식을 재현한 구조로 높은 천정과 스테인글라스 창문, 2개의 첨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모는 길이 107m, 첨탑의 최고 높이 74.6m이다.

○ 하이드 파크(Hyde Park)

도시명	시드니
주소	Elizabeth St, Sydney NSW 2000
운영시간	월~일: 오전 5시~오후 12시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하이드 파크는 시드니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건설됐다. 주변에는 NSW주 법원, 세인트 제임스 교회, 세인트 메리 대성당, 호주 박물관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공원 중앙을 파크 스트리트가 가로고 있어 하이드 파크는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 식민시대 초기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됐으며 크리켓, 경마 등의 경기가 열렸다.

○ 블루 마운틴 국립공원(Blue Mountain National Park)

도시명	시드니
주소	23-31 Echo Point Rd, Katoomba NSW 2780
운영시간	월~일: 오전 9시~오후 5시
휴무일	성탄절
명소소개	시드니 서쪽 약 100km에 소재하는 호주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대협곡이다. 급변하는 일기에 따른 풍경이 장관으로 세계 유명화가들의 주요 소재지이기도 하다. 주요 관광 포인트는 세자매봉(Three Sister), 에코 포인트(Echo Point), 오솔길과 대협곡 및 폭포, 수많은 야생조류 및 갖가지 식물군, 케이블 관광열차 등이 있다.
비고	블루 마운틴 국립공원 주소는 최대 명소인 에코 포인트로 기재

<자료원 : City of Sydney 및 명소별 대표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 더 미트 앤 와인 코(The Meat and Wine Co)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8629 8888
주소	Ground level, 100 Barangaroo Avenue, Barangaroo NSW 2000
가격	A\$40~A\$60

영업시간	일~목: 오후 12시~오후 10시 금~토: 오후 12시~오후 10시 30분
휴무일	없음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호주식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으로 주요 메뉴는 육류 및 해산물 꼬치 요리, 스테이크, 립(갈비) 등이다.

◦ 킹스레이스 스테이크하우스(Kingsleys Steakhouse)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9295 5080
주소	29A King Street, Sydney NSW 2000
가격	A\$40~A\$60
영업시간	월~토: 오후 12시~오후 3시, 오후 5시 30분~오후 10시
휴무일	일요일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호주식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으로 주요 메뉴는 스테이크, 구운 생선 등이다.

◦ 포춘 빌리지(Fortune Village)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9299 7273
주소	209 Clarence St, Sydney NSW 2000
가격	A\$20~A\$30
영업시간	월~토: 오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 오후 5시 30분~오후 9시 30분
휴무일	일요일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주요 중식당으로 메뉴는 생선, 소고기 및 돼지고기 요리 등이 있다.

◦ 골든 센츄리(Golden Century Seafood Restaurant)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9212 3901
주소	393-399 Sussex St, Sydney NSW 2000
가격	A\$30~A\$50
영업시간	월~일: 오후 12시~오전 4시
휴무일	없음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중식당이며, 주요 메뉴는 바다가재, 왕게, 새우, 전복 등 해산물 요리 등이다.

○ 스시 테이(Sushi Tei)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9232 7288
주소	1 Chifley Square, Sydney NSW 2000
가격	A\$15~A\$20
영업시간	월~금: 오전 11시 30분~오후 9시 30분 토~일: 오후 12시-오후 9시 30분
휴무일	없음
소개	가격대는 1인 기준. 일식당이며, 주요 메뉴는 스시, 사시미, 일본라면, 나베 등이다.

<자료원 : 식당별 홈페이지>

- 한국식당

○ 스시 앤 그릴(Sushi and Grill)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9264 7888
주소	LG 119 York St, Sydney, NSW 2000
가격	A\$13~A\$20
영업시간	월~토: 오전 11시 30분~오후 3시, 오후 5시 30분~오후 9시 30분
휴무일	일요일
소개	주로 일식을 판매하고 있으나 한인 교민이 운영하는 일식당으로 김치볶음밥, 회덮밥 등 일부 한식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메뉴는 스시, 사시미, 회덮밥, 우동, 카레 등이다.

○ 단지(Danjeo)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8084 9041
주소	1-7 Albion Pl, Sydney NSW 2000
가격	A\$18~A\$50
영업시간	월~일: 오전 11시 30분~오전 1시
휴무일	없음
소개	주요 메뉴는 갈비탕, 제육볶음, 숯불 불고기, 소꼬리찜 등이며 비교적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한식점이다.

○ 시드니 마당(Sydney Madang Korean BBQ)

도시명	시드니
전화번호	+61 2 9264 7010
주소	371A Pitt St, Sydney NSW 2000
가격	A\$15~A\$25
영업시간	월~일: 오전 11시 30분~오전 2시
휴무일	없음
소개	주요 메뉴는 갈비탕, 제육볶음, 숯불 불고기, 소꼬리찜 등으로 한국인과 중국인들의 방문이 많은 식당이다.

<자료원 : 식당별 홈페이지>

## 바. 호텔

### - 비즈니스 호텔

#### ○ 샹그릴라(Shangri-La)

도시명	시드니
주소	176 Cumberland Street, The Rocks, Sydney, NSW 2000
전화번호	+61 2 9250 6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shangri-la.com/sydney/shangrila">http://www.shangri-la.com/sydney/shangrila</a>
숙박료	A\$250~450(일반객실, 1박 기준)
소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 근처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윈야드(Wynyard)역 또는 써클러키(Circular Quay)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 웨스턴 시드니(The Westin Sydney)

도시명	시드니
주소	1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전화번호	+61 2 8223 1111
홈페이지	<a href="http://www.westinsydney.com">http://www.westinsydney.com</a>
숙박료	A\$220~350(일반객실, 1박 기준)
소개	시드니 시내 중심가에 있으며, 주변으로 쇼핑센터 및 각종 사무실들이 즐비하다. 윈야드(Wynyard)역에서 도보 5분, 마틴플레이스(Martin Place)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 하얏트 리젠시(Hyatt Regency Sydney)

도시명	시드니
주소	161 Sussex Street Sydney NSW 2000
전화번호	+61 2 8099 1234
홈페이지	http://www.hyatt.com/Sydney/Hotel
숙박료	A\$180~250(일반객실, 1박 기준)
소개	시드니 시내 중심가 달링하버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운홀(Town Hall)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레노베이션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의 시설이 깨끗하며 주변에 고객 미팅이 가능한 카페도 다수 위치하고 있다.

<자료원 : 호텔별 홈페이지>

## - 게스트하우스

### o 다나네 테라스하우스(Danane Terrace House)

도시명	시드니
주소	9 Crystal Street Waterloo NSW 2017
전화번호	+61 434 311 665
홈페이지	http://www.minbak.com.au
숙박료	A\$80(싱글룸)
소개	시드니공항에서 2정거장 거리의 테라스하우스로 시내와도 가까워(기차 2-3정거장) 단기 여행자 및 해외 출장자들에 적합하다.

<자료원 :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 사. 치안

### 치안상황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흥거나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전반적으로 치안 상태가 양호하나, Ultimo, Redfern과 같은 지역이나 킹스크로스과 같은 유흥가에는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야간에는 시내에서도 그룹으로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주말에는 음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괜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호기심에 주말에 유흥가를 전전하는 행위는 불행한 사고에 휘말릴 수 있으니 자제하도록 한다. 호주는 경찰의 권한과 권위가 보장돼 있어 범죄자들도 경찰을 상당히 두려워한다. 혹시 경찰의 조사를 받거나 연행을 당할 경우 반항하지 않고 침착하게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다. 호주에도 마약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유흥가 등지를 중심으로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호주에서도 마약은 불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클럽이나 술집에서 낯선 사람이 주는 약이나 음료를 절대로 받아먹어서는 안 된다.

### 응급상황 대처요령

#### 1) 교통사고

o 안전한 곳에 정차: 교통사고가 나면 먼저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시켜야 한다. 사고 현장을 그냥 떠나는 것은 호주법상 범법 행위로 간주된다. 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경고등을 켜고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차가 정차해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 체크: 본인을 포함하여 상대방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가 안전한지도 확인한다. 만약, 부상자가 긴급한 위험 상황에 처해있지 않은 경우 선불리 부상자를 옮기지 않도록 한다.

○ 긴급 구조 서비스 및 경찰에 전화: 부상자가 발생하였거나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나 마약을 복용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이 차량을 멈추지 않거나 개인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000을 통해 긴급 구조 센터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정보 교환: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구급차를 부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많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상대방과 여전히 연락처를 교환할 필요가 있으며 양측 모두 아래 사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 사고 날짜, 시간 및 장소
- 상대방 운전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보험회사, 차량 등록번호, 차량 색깔과 제조사 및 모델명)
- 상대방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상황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음)
- 경찰이 출동한 경우 경찰관의 이름, 경찰서, 연락처

○ 보험회사에 연락: 본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 가능한 한 빨리 연락을 취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 이름, 연락처, 차량 소유주와 상대방 운전자의 면허번호
- 차량 정보(차량 등록번호, 차량 색깔, 차량 제조사 및 모델)
-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 정보
- 사고 개요

##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재발급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신청에서 발급까지 통상 3~4주가 소요(본인 비용 부담으로 DHL 서비스 이용 시 1~2주)된다. 출국이 임박한 경우, 단수여권 신청이 가능하나, 여권용 사진 2매 및 호주에서 출국하는 비행기 표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 재발급 신청서(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 및 공관 내 구비)
- 한국 또는 호주 신분증(없을 경우 지문으로 확인가능)
- 여권사진(공관에서 여권사진 촬영 가능(무료))
- 여권수수료(여권 형태 및 신청자 연령 등에 따라 A\$18~63.6로 현금만 가능)

주호주 한국대사관 호주 수도인 캔버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사관은 시드니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공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주호주 한국대사관: +61-2-6270-4100
- 시드니총영사관: +61-2-9210-0200

## 3) 응급 전화번호

호주의 응급 전화번호는 경찰, 소방서, 구급차 모두 000 번으로 통합돼 있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전화 000 번을 누르고 Police(경찰), Ambulance(응급차), Fire(화재) 중 상황을 말하면 안내원이 필요한 서비스로 바로 연결해 준다. 000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나, 응급실 이용 등 개인 관련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현지의 의료비는 앰블런스를 부를 경우 400~1,000호주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응급 치료비도 상당히 비싸다.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8. 생활정보

### 가. 주택

####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 1) 교통과 학군 등 입지를 고려

호주에서 집을 구하는 데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가장 중요한 예산 이외에도 자녀가 취학할 학교의 위치, 전철(City rail)역과의 거리, 쇼핑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호주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취학 아동이 있거나 또는 직장에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지역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 2) 주요 주택 중개 사이트

주택 물색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인 Domain.com.au 또는 Realestate.com.au 에 올라오는 임대 광고를 검색하여 얻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마다 체인을 가지고 있는 Ray White, First National 등과 같은 지역 부동산을 통하여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매물 정보를 개재한 해당 부동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정보와 인스펙션 가능 여부를 문의한다. (주요 웹사이트: <http://www.domain.com.au> 또는 <http://www.realestate.com.au>)

##### 3) 주택 임대 신청 과정

###### ○ 방문하여 확인하기

호주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달라 마음에 드는 주택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집들을 많이 보는 것이 선불리 쉽게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다만 시드니 지역의 경우 최근 주택 임대 수요가 워낙 높아 대기 중에 다른 수요자에게로 임대 매물이 계약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수요가 많은 임대물은 수요자가 몰려 주인이 임대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사전에 부동산 담당자들과 매물이 있는지 전화상으로 확인하고, 적당한 매물이 있는 경우 만날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드니의 경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물이 유효한지 확인만 되면 무작정 부동산을 찾아가 바로 집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주었는데, 요즘은 부동산마다 특정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인스펙션을 실시한다.

###### ○ 신청서 제출

임대물의 경우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을 때 바로 신청서(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요자가 많이 몰리는 경우는 가능한 한 임대인이 선택하기 좋은 정보를 작성해야 주인에게 선택될 확률이 높다. 최근 임대 기록, 보증인, 직업, 연 수입 등의 정보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고, 100포인트 이상의 신분증 서류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4건의 임차인 기록이 40포인트, 여권이 30포인트, 호주 운전면허증이 30포인트, 재직증명서 20포인트, 의료보험카드 10포인트, 자동차 등록증 10포인트 등이다. 이민자들의 경우 호주에서의 임대 기록이 없는 대신에 몇 개월 분의 임차료를 선불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신규 주택 건설이 부진한 반면 해외로부터의 인구 유입은 급증하고 있어 도시 지역의 경우 집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인기 거주 지역의 경우 임차 매물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 ○ 보증금 및 집세 내기

호주의 집세는 1주 단위로 계산된다. 즉 주당 AU\$400 혹은 AU\$700 정도 하는 식이다. 일단 신청서가 통과되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는 서류상 집주인과 하는 것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 작성 및 관련 비용 접수 등의 모든 일을 대행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집주

인이 부담한다. 집세 납입 주기는 보통 2주 단위로 납입하나 4주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증금(Bond/4주분의 임차료)과 월세(Rent/1개월분 임차료)가 전부이다. 보증금은 계약 시 지불하고 계약 종료 시 돌려받게 되나, 퇴거 시 집의 상태에 따라서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일부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최초 계약 시 집의 상태에 대한 안전 점검양식(inspection form)을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해당 Inspection 작성 시 임차인은 추후를 대비하여 세심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물을 점검하고 최종 결정을 한 후 계약을 맺고 입주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다. 호텔 비용이 매우 높음을 감안할 때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에 거주하면서 제반 사항을 해결하고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권한다. 4인 가족 기준 1실의 한 달 민박료는 식사 포함 1,500 호주달러 전후이다.

## 전화

일반 전화라인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텔스트라 또는 옵터스에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가 있다. 텔스트라에 비해 옵터스는 서비스 가능지역이 한계가 있으나, 텔스트라에 비해 기본요금과 통화료가 저렴한 편이다. 신청 시에는 거주지 확인을 위하여 주택 임차 계약서를 통해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보통 신청 시 새로운 전화번호를 받게 되지만, 실제 개통까지는 1-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힘들 경우에는 한국인 통역을 바꿔달라고 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http://www.telstra.com.au> 또는 <http://www.optus.com.au>) 시드니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통신서비스 회사가 다수 있는 바, 이들의 도움을 얻어 전화 신청은 물론 인터넷 연결(ADSL)까지 해결할 수 있다.

## 전압/플러그

전압은 240V, 주파수는 50Hz이며 플러그는 3구 콘센트이다. 이중 아래 1구는 접지로 쓰이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이다. 현지에서 변압기를 구입하고자 할 때, 한인(교민) 식품점을 이용하면 2~5불 사이로 저렴한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현지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구매하고자 할 경우, 트래블 어댑터(Travel Adaptor)를 요청하면 되며 가격은 25불에서 50불까지로 다양하다. 가정용 교류제품은 표시 전압은 평균이기 때문에 20V의 차이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전열제품 같은 전력소모가 큰 제품은 호주에서 사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현지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 식수

일반적으로 호주 식당에서는 탭 워터(Tap Water)라고 하여 수도물을 무료 식수로 제공한다. 이처럼 많은 호주인들은 수도물도 양호하기 때문에 식수로 통상 마신다. 생수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PB(Private Brand) 제품이나 일반 생수 브랜드 제품 모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 구매방법

호주 생활에 있어 자동차 구입은 필수라 하겠다. 대중 교통망은 전반적으로 시설 면, 용량 면에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차량 구입에 있어 우선 결정할 사항은 신차를 구입할 것인지 중고차를 구입할 것인지 하는 것인데, 호주의 경우 중고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는 재판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신의 자금 사정이나 체제 기간 등에 맞추어 결정하면 된다.

시드니 지역의 경우 중고차 매매 점은 파라마타 로드(Parramatta Road)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소재해 있다. 그 외 자동차 브랜드별로 한국인 담당자들이 한 명씩은 근무하고 있어 영어를 못 해도 차량 구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중고차 매매로 가장 대표적인 웹사이트로 [www.carsales.com.au](http://www.carsales.com.au), [www.carsguide.com.au](http://www.carsguide.com.au) 등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매물의 가격이 딜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이때 사고기록, 차량 보증기간, 차량 등록 기한, 명의 이전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해당 사이트는 호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고차 거래 사이트로 성장하면서 개인이 아닌 딜러들이 더욱더 많이 활개를 치고 있어 최대 판매 및 구입자가 딜러가 되어 좋은 물건은 좋은 가격으로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경매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수가 있는데, 차 상태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경매를 통해 차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경매 정보는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을 검색하고 경매 해당 요일에 경매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입찰을 참여하면 된다. (관련 홈페이지: [www.pickles.com.au](http://www.pickles.com.au) 또는 [www.governmentauctions.com.au](http://www.governmentauctions.com.au))

## 차량가격

호주는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높아 비교적 자동차 가격이 높은 편이다. 특히 고급 차의 경우, 고급차세(luxury car tax)가 적용되어 한국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중고차 구매 및 판매 시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 카세일즈: [www.carsales.com.au](http://www.carsales.com.au)

- 드라이브: [www.drive.com.au](http://www.drive.com.au)

차량 가격은 출시연도, 브랜드 및 모델별로 상이하나, 예시로 2018년 12월 기준 파악된 2018년 출시 현대 소나타(세단) 신차 가격은 A\$35,000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7년 출시된 현대 소나타 액티브 모델은 Carsales 홈페이지에서 현재 약 A\$26,555에 판매되고 있다.

## 운전면허 취득

25세 이상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해 '운전경력자인정(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 제도를 시행하여 한국 운전 면허증을 호주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준다. NSW주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4.5톤 이하 트럭, 12인승 이하 승합차 면허에 해당하는 보통 면허이며, 임시체류자의 경우 한국운전 면허증 원본과 영문번역본(대사관/총영사관 공증 필요)이 있으면, 비자 기간 내 또는 운전면허 만료일까지 운전이 가능하므로, 교환할 필요는 없다.

교환 발급 시, 한국 운전면허증은 반납 및 천공처리 되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각 주별 운전면허 발급신청서
- 한국 운전 면허증 원본 및 영문번역본(영문번역본은 NATTI 번역인증, 대사관/총영사관 번역문 인증을 인정하나, 국제운전면허증도 영문번역본으로 인정함)
- 신분증명서(여권, Medicare 카드)
- 각주 관할 지역 내 거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름과 주소가 명기된 임대계약서 전기, 전화 등 기타 유틸리티 납부통지서 등)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신청서(온/오프라인 수령 가능)

본격적으로 호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주행 시험을 치러야 한다. 필기시험은 한국어로도 응시할 수가 있고, 기출 문제가 교통 관리국 홈페이지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합격에 큰 어려움은 없는 편이다. 주행 시험의 경우 통상 몇 주 정도 개인 강사에게 수강을 받은 후 응시하게 된다. 최근 초보운전면허(P 면허) 소지자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오에 따라, 실기 시험에 대한 평가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편이다.

NSW주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시험 응시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6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운전하여야 한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된 한국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 <http://www.rms.nsw.gov.au/>)

## 다. 은행 계좌 개설

### 주요은행

- Commonwealth 은행: 호주 주요 은행 중 하나로 지역 내 다수의 ATM과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 Westpac 은행: 호주 주요 상업 은행 중 하나로 뉴질랜드에서는 두 번째로 큰 은행이기도 하다.
- NAB 은행: 빅4(BIG4)라 불리는 호주 주요 상업 은행 중 하나로 자산 가치만 세계 41위를 차지하고 있다.
- ANZ 은행: Australia and New Zealand 은행의 준말로 호주 빅4 은행에 속해 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가장 큰 은행이다.

### 계좌 개설방법

호주의 은행은 NAB(National Australia Bank), Commonwealth Bank, Westpac, ANZ 등이 있으며, 은행에 여권을 가지고 가면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서 은행카드(Keycard)가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인터넷 뱅킹, 수표책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은행계좌 개설 시 반드시 거주지 주소를 요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앞서 언급한 민박집 주소를 활용할 수 있다. 호텔 주소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 주소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차후 계좌 내역서(Bank statements) 송부, 수표책 송부 시 여러모로 번거로울 수가 있다.

호주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행은 Commonwealth Bank와 Westpac 이며, 가장 많은 지점과 ATM 기계를 보유하고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호주는 EFTPOS라는 전자 결제 시스템이 비교적 생활화 되어있어 굳이 ATM을 사용하지 않아도 매장에서 직접 결제는 물론 돈을 찾을 수가 있다. EFTPOS가 좋은 이유는 ATM과는 다르게 수수료가 전혀 없다.

호주 10대 기업 순위 안에 호주의 주요 은행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호주는 선진적인 금융감독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으며 대형 광산 투자 및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많아 전문 금융기관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수수료가 없는 일반 계좌들이 주요 은행들로부터 다수 출시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해 입출금할 수 있는 계좌(NAB: iSaver, CBA: NetbankSaver 등)들이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마케팅 전략으로 삼아,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집세 납부는 본인 은행 계좌로부터 자동 이체하는 방법도 있으며 부동산에서 발행한 Deposit book을 매월 작성 현금 혹은 수표로 해당 은행에 직접 내거나, 혹은 최초 소개받은 부동산에 가서 현금 혹은 수표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

##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없음.

- 현지학교

- 채스우드 공립학교(Chatswood Public School)

도시명	시드니
커리큘럼	초등학교는 만 5~12세의 학생이 다닐 수 있으며, 이는 유치원(만 5세)에서 6학년까지 이른다. 통상 오전 8시 55분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을 한다. 해당 학교는 시드니 채스우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희망 학생들은 방과 후 음악 및 클럽 활동 등의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학비	연 약 A\$12,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chatswoodps.nsw.edu.au">http://www.chatswoodps.nsw.edu.au</a>
비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추가비용(지원신청서, 보험, 서비스 비용, 교복 등)이 발생한다.

○ 버우드 여자고등학교(Burwood Girls High School)

도시명	시드니
커리큘럼	7학년부터 12학년 까지 과정으로 중고등교육에 해당한다. 여자 고등학교로 수업 시작은 오전 8시 45분부터 3시 15분까지이다. 댄스, 스포츠, 악기 등 다양한 특별활동을 제공한다.
학비	연 약 A\$13,800~15,200
홈페이지	<a href="http://web3.burwoodg-h.schools.nsw.edu.au/">http://web3.burwoodg-h.schools.nsw.edu.au/</a>
비고	중고등학교로 학년에 따라 학비가 상이하다. 추가비용(영어프로그램, 지원신청서, 보험, 서비스 비용, 교복 등)이 발생한다.

○ 애쉬필드 남자고등학교(Ashfield Boys High School)

도시명	시드니
커리큘럼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과정으로 중고등교육에 해당한다. 남녀공학이며 시드니 스트라스필드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통상 오전 8시 55분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을 한다. 미술, 스포츠 등의 특별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학비	연 약 A\$13,800~15,200
홈페이지	<a href="https://ashfieldbo-h.schools.nsw.gov.au/">https://ashfieldbo-h.schools.nsw.gov.au/</a>
비고	중고등학교로 학년에 따라 학비가 상이하다. 추가비용(영어프로그램, 지원신청서, 보험, 서비스 비용, 교복 등)이 발생한다.

<자료원 : NSW주정부교육부 및 학교별 홈페이지>

마. 병원

○ 시드니 빈센트 병원(St Vincent's Hospital Sydney)

도시명	시드니
주소	390 Victoria Street Darlinghurst NSW 2010
전화번호	+61-2-8382-1111
진료과목	종합병원

○ 이스트우드 로얄병원(Royale Eastwood Medical Centre)

도시명	시드니
-----	-----

주소	Suite 101, Level 1 2 Rowe St Eastwood NSW 2122
전화번호	+61-2-9858-3877
진료과목	일반진료
비고	한국의사 있음

○ 노웨스트 사립 병원(Norwest Private Hospital)

도시명	시드니
주소	11 Norbrik Drive, Bella Vista NSW 2153
전화번호	+61-2-8882-8882
진료과목	종합병원

<자료원 : 병원별 홈페이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웨스트필드 시드니(Westfield Sydney)

주소	Pitt St Mall and, Market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westfield.com.au">http://www.westfield.com.au</a>
비고	시드니 CBD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급 브랜드가 다수 입점해 있다. Westfield Sydney는 시내 중심가 외에도 주요 지역에 다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 데이비드 존스(David Jones)

주소	86/108 Castlereagh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davidjones.com">http://www.davidjones.com</a>
비고	시드니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Westfield Sydney와 연결되어 있어 이동이 용이하다. 매장 내 다양한 호주 및 국제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하에는 각종 식료품도 판매하고 있다. 시내 중심가 외에도 주요 지역에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 마이어(Myer)

주소	436 George S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myer.com.au">http://www.myer.com.au</a>
비고	시드니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David Jones와 같이 Westfield Sydney와 연결되어 있다.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다. 시내 중심가 외에도 주요 지역에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원 : 백화점별 홈페이지>

- 식품점

○ 울워스(Woolworths)

도시명	시드니
주소	Park St and, George St, Sydney NSW 2000
취급 식료품	과일, 육류, 생선, 스낵, 생필품 등
비고	호주 최대 마트 중 하나로 호주 전지역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매장에 따라 저녁 10~12시까지 운영한다.

○ 콜스(Coles)

도시명	시드니
주소	650 George St, Sydney NSW 2000
취급 식료품	과일, 육류, 생선, 스낵, 생필품 등
비고	호주 최대 마트 중 하나로 전역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매장에 따라 저녁 10~12시까지 운영한다.

○ Aldi(알디)

도시명	시드니
주소	1 Bay St, Broadway NSW 2007
취급 식료품	과일, 육류, 생선, 스낵, 생필품 등
비고	독일계 마트로 호주 유력 식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식품 및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Woolworths나 Coles에 비해서는 제품의 종류나 규모면에서는 작은 편이다. 매장에 따라 저녁 8~9시까지 운영한다.

<자료원 : 식품점별 홈페이지>

- 기타 편의시설

○ 피트니스 퍼스트(Fitness First)

도시명	시드니
주소	1 Shelley Street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fitnessfirst.com.au">http://www.fitnessfirst.com.au</a>
소개	헬스장 체인

○ 버진 액티브(Virgin Active)

도시명	시드니
주소	2/197 Pitt Street Mall, Sydney NSW 2000

홈페이지	http://www.virginactive.com.au
소개	헬스장 체인

○ 무어파크 골프(Moore Park Golf)

도시명	시드니
주소	Cnr Anzac Pde and Cleveland St Moore Park Sydney NSW 2021
홈페이지	http://www.mooreparkgolf.com.au
소개	골프장

<자료원 : 편의시설별 홈페이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년	2019-01-01	
건국 기념일	2019-01-28	
성 금요일	2019-04-19	
부활절	2019-04-20	
부활절	2019-04-21	
부활절	2019-04-22	
국군의 날	2019-04-25	
여왕 탄생일	2019-06-10	
은행휴일	2019-08-05	일부 은행 및 회계 관련 기업만 적용
노동절	2019-10-07	
성탄절	2019-12-25	
박싱데이	2019-12-26	

<자료원 : Destination NSW>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9. KOTRA 무역관 안내

### 시드니 무역관

####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Korea Trade Centre, Sydney. Suite 2404 Level 24, 1 Market St., Sydney NSW 2000
- 전화번호: +61-2-9264-5199
- 이메일: info@kotra.org.au
- 홈페이지: www.kotra.or.kr/KBC/sydney

#### 공항-무역관 이동

- 방법 1: 택시 - Market Street 1번지 빌딩에서 하차하면 된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30분, 택시요금은 약 A\$50.00이 예상된다.
- 방법 2: 대중교통 - 시드니 Kingsford 공항역(국제선 또는 국내선)에서 City 방향 기차를 이용해 Town Hall 역에서 하차한다. Market Street 방향 출구로 나온 뒤 Market Street를 따라 약 500m 도보로 걸어오면 왼편에 파란색의 BT Tower가 보인다. BT Tower 24층에 무역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기차 편도요금: Opal 카드 소지시 A\$17.38, 일반편도 경우 약 A\$20.00)

### 멜버른 무역관

####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Korea Trade Centre, Melbourne. Level 12, 468 St. Kilda Rd, Melbourne, VIC 3004
- 전화번호: +61-3-9860-0500
- 이메일: info@kotramelbourne.org.au
- 홈페이지: www.kotra.or.kr/KBC/melbourne

#### 공항-무역관 이동

- 방법 1: 택시 - 멜버른 공항에서 무역관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며, 택시요금은 약 A\$55.00로 예상된다.
- 방법 2: 대중교통(Skybus 및 Tram) - 멜버른 공항에서 Sky bus를 타고 서던 크로스 스테이션에서 내린 후, 서던 크로스 스테이션 Collin Street 앞에서 Swanston Street 행 트램을 타서 Swanston Street 에서 내린다. 그리고 St. Kilda 행 트램(Tram)으로 갈아탄 후 트램 STOP 24에서 하차한다. 멜버른 무역관은 트램 STOP 24 앞에 위치하고 있다.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